

인권정보자료실  
CPb1.13.2

# 유서사건 총자료집

II. 공판기록

# 유서사건 총자료집

II. 공판기록

인권정보자료실  
CPb1.13.2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총자료집

II  
공판기록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총자료집

II  
공판기록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유서사건 총자료집

II

(공판기록)

1993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차 례

자료 나-0-3 증거목록(서울형사지방법원, 검사신청) / 6  
 자료 나-0-4 증거목록(서울고등법원, 검사신청) / 16  
 자료 나-0-5 증거목록(서울형사지방법원, 변호인신청) / 18  
 자료 나-0-6 증거목록(서울고등법원, 피고인 및 변호인 신청) / 24  
 자료 나-0-7 공소장 / 27  
 자료 나-0-8 구속영장 / 28  
 자료 나-0-9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 30  
 자료 나-0-10 변호인 선임신고서 / 30  
 자료 A-1 사실:유서는 과연 누가 썼는가 / 32  
 자료 나-0-11 보석청구서(변호인) / 33  
 자료 나-0-12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서울지법 제25부) / 34  
 자료 A-2 김기설씨 유서는 자필/일인 감정가 / 35  
 자료 B-1 검찰은 ... 변호인에 대한 압력을 철회하라(변호인단, 91.7.5) / 36  
 자료 B-2 공소장(국가보안법) / 33  
 자료 B-3 강기훈씨 추가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민련, 1991.8.22.) / 46  
 자료 나-0-13 민원서 송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명의) / 47  
 자료 나-0-14 대표 변호인 선임서 / 48  
 자료 나-0-15 녹취허가 신청 / 48  
 자료 나-0-16 증거목록 / 48  
 자료 A-3 대필혐의 강기훈씨 28일 1차공판(동아, 91.8.22.) / 51  
 자료 A-4 해설:강기훈씨 내일 첫공판(동아, 91.8.27.) / 52  
 자료 B-4 성명서:강기훈씨 1차공판에 즈음하여(KNCC 인권위, 1991.8.28.) / 53

1심 1회 공판기록 91. 8. 28.

자료 나-1-1 1회 공판조서 / 54  
 자료 나-1-2 검찰 참고자료 검찰 제출 / 72  
 자료 A-5 국과수 필적감정 비난/강기훈씨 첫공판서(동아, 91.8.28.) / 74  
 자료 B-5 1심 모두진술(변호인, 강기훈) / 75  
 자료 B-6 성명서:이번 재판은~(전민련·후원회, 91.8.28.) / 77  
 자료 나-1-3 민원서 송부(예장 총회 명의, 1991.8.30.) / 79  
 자료 나-1-4 진정서[천주교 대교구 정평위(91.5.15) · 이일규(91.6.24)] / 80

## 1심 2회 공판기록 91. 9. 11.

- 자료 나-2-1 2회 공판조서(1심 2회공판, 91.9.11.) / 86  
 자료 나-2-2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목록 / 91  
 자료 나-2-4 검찰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변호사측, 91.9.20.) / 92  
 자료 나-2-5 증인 불출석 사유서(장병호) / 93

## 1심 3회 공판기록 91. 9. 25.

- 자료 나-3-1 3회 공판조서 / 94  
 자료 나-3-2 증인신문조서/이계구 / 96  
 자료 나-3-3 검찰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91.9.25.) / 101  
 자료 A-6 강기훈씨 3차 공판(동아, 91.9.25.) / 101

## 1심 4회 공판기록 91. 10. 9.

- 자료 나-4-1 4회 공판조서 / 102  
 자료 나-4-2 증인신문조서/김정열 / 103  
 자료 나-4-3 증인신문조서/장병호 / 109  
 자료 나-4-4 증인신문조서/김형영 / 113  
 자료 나-4-5 검찰측 참고자료 제출 / 130  
 자료 A-7 유서대필사건 공판(동아, 91.10.10.) / 132  
 자료 나-5-1 증인소환 철회요청서(홍성은·윤석순, 91.10.19.) / 133

## 1심 5회 공판기록 91. 10. 23.

- 자료 나-5-1 5회 공판조서 / 134  
 자료 나-5-2 증인신문조서/김형영 / 135  
 자료 나-5-3 참고자료 제출(오오니시 요시오에 대한 인적사항, 검찰, 91.10.23.)  
 자료 나-5-4 참고자료 제출(김형영 등 공동명의 논문, 91.10.23.) / 143  
 자료 나-5-5 변호인 증거제출(필적자료, 91.10.23.) / 144  
 자료 나-5-6 증인신청(변호인) / 145  
 자료 나-6-1 홍성은양 출두 안내(동아, 91.10.24.) / 147

## 1심 6회 공판기록 91. 11. 6.

- 자료 나-6-1 6회 공판조서 / 148  
 자료 나-6-2 증인신문조서 / 김시중 / 149  
 자료 나-6-3 증인신문조서 / 홍중희 / 153

- 자료 나-6-4 증인신문조서 / 박찬수 / 156  
 자료 나-6-5 증인신문조서 / 강효남 / 158  
 자료 나-6-6 증인신문조서 / 정일부 / 161

## 1심 7회 공판기록 91. 11. 7.

- 자료 나-7-1 7회 공판조서 / 164  
 자료 나-7-2 증인 신문조서 / 홍성은 / 165  
 자료 나-7-3 변호인 증거에 대한 의견(검찰) / 182  
 자료 A-9 홍양 검찰진술 일부 번복 (동아, 91.11.8.) / 183  
 자료 A-10 해설:『유서대필』공판 새파란 (동아, 91.11.8.) / 184  
 자료 나-7-4 필적 이동비율에 대한 자료(김형영, 91.11.15.) / 185

## 1심 8회 공판기록 91. 11. 20.

- 자료 나-8-1 8회 공판조서 / 186  
 자료 나-8-2 증인신문조서 / 이보령 / 187  
 자료 나-8-3 증인신문조서 / 박경민 / 193  
 자료 나-8-4 증인신문조서 / 이영미 / 196  
 자료 나-8-5 증인신문조서 / 서준식 / 200  
 자료 나-8-6 증인신문조서 / 임무영 / 208  
 자료 나-8-7 증인신문조서 / 고상만 / 211  
 자료 나-8-8 증인신문조서 / 이동진 / 212  
 자료 나-8-9 증인신문조서 / 김병희 / 216  
 자료 나-8-10 증인신문조서 / 최경환 / 220  
 자료 A-11 서준식씨 변호인 증인신문(동아, 91.10.21.) / 224

## 1심 9회 공판기록 91. 11. 27.

- 자료 나-9-1 8회 공판조서 / 225  
 자료 나-9-2 증인신문조서 / 이효경 / 226  
 자료 나-9-3 통역인 신문조서 / 허초 / 226  
 자료 나-9-4 증인신문조서 / 오오니시 요시오 / 231

## 1심 10회 공판기록 91. 11. 28.

- 자료 나-10-1 10회 공판조서 / 248  
 자료 나-10-2 증인신문조서 / 오오니시 요시오 / 250  
 자료 A-13 일본인 필적감정가 증인 출두(동아, 91.11.27.) / 254

- 자료 A-14 감정의 실수 있으나 유서-강씨필적 달래(동아, 91.11.28.) / 255  
 자료 A-15 해설: 「국과수감정」 채택여부 열쇠(동아, 91.11.29.) / 256

## 1심 11회 공판기록 91. 12. 4.

- 자료 나-11-1 11회 공판조서 / 257  
 자료 나-11-2 변론요지서 / 변호인 / 258  
 자료 나-11-3 최후진술서 / 강기훈 / 289  
 자료 나-11-4 논고문 / 검찰 / 296  
 자료 나-11-5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 308  
 자료 나-11-6 참고자료 / 김형영 / 310  
 자료 A-15 강기훈씨 7년 구형(동아, 91.12.5.) / 317  
 자료 A-16 해설: 확증없는 「대필공방」 판결 관심(동아, 91.12.5.) / 318  
 자료 B-7 성명서: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KNCC 인권위, 91.12.5.) / 319  
 자료 B-8 진정서: 목회자연명(예장 강기훈 대책위 인권위) / 320

## 1심 12회 공판기록 91. 12. 20.

- 자료 나-12-1 판결문 / 321  
 자료 A-17 강기훈씨 3년선고(동아, 91.12.20.) / 339  
 자료 A-18 해설: 「유서대필」 1심선고 배경(동아, 91.12.20.) / 340  
 자료 A-19 기자의 눈: 「양금」남긴 「유서대필」 공판(동아, 91.12.20.) / 341  
 자료 B-9 성명서: 1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민련, 91.12.20.) / 342  
 자료 B-10 성명서(KNCC 인권위, 91.12.20.) / 343  
 자료 A-20 주간초점: 사회(동아, 91.12.22.) / 344

## 항소심 공판기록

- 자료 다-0-1 항소장(강기훈) / 345  
 자료 다-0-2 항소장(변호인) / 345  
 자료 다-0-3 항소장(검사) / 345  
 자료 다-0-4 변호인 선임신고서 / 345  
 자료 A-21 “돈받고 허위감정” 폭로 파문확산(동아, 92.2.11.) / 346  
 자료 A-22 사실: 국과수, 믿어도 되나(동아, 92.2.11.) / 347  
 자료 A-23 국과수 「성역」 된서리/법원의 「배척판결」 의미(동아, 92.2.12.) / 348  
 자료 B-11 성명서: 국과수 허위감정사건에 대한 입장(KNCC, 92.2.12.) / 347  
 자료 B-12 국과수 허위감정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16개 단체, 92.2.14.) / 350  
 자료 B-13 검찰의 감정비리사건 축소은폐수사를 규탄(9개단체, 92.2.18.) / 351  
 자료 B-14 허위감정 제보자 조병길씨 법정구속에 대한 논평(전민련, 92.2.20.) / 352  
 자료 B-15 기자회견문: 강기훈 공대위 결성에 즈음하여(92.2.24.) / 353

- 자료 B-16 검찰의 축소·은폐수사를 규탄한다(강기훈 공대위, 92.2.24.) / 354  
 자료 다-0-5 항소이유서(검찰, 92.2.18.) / 355  
 자료 다-0-6 항소이유서(변호인) / 357  
 자료 다-0-7 항소이유서(강기훈, 92.2.) / 365  
 자료 B-17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강기훈 공대위, 92.3.11.) / 372

## 항소심 1회 공판기록 92. 3. 12.

- 자료 다-1-1 공판조서 / 374  
 자료 다-1-2 증거신청 / 변호인 / 383  
 자료 A-25 유서대필 강기훈씨 오늘 항소심(동아, 92.3.12.) / 386

## 항소심 2회 공판기록 92. 3. 26.

- 자료 다-2-1 공판조서 / 387  
 자료 다-2-2 증인신문조서 / 한송흙 / 387  
 자료 다-2-3 증인신문조서 / 이지혜 / 398  
 자료 다-2-4 증인신문조서 / 이보은 / 414  
 자료 다-2-5 증인신문조서 / 권범계 / 425  
 자료 다-2-6 권범계가 표시한 수첩복사 부분 / 431  
 자료 다-2-7 권범계가 상황일지에 표시한 김기철 필적 / 433  
 자료 다-2-8 증거제출(1991년 분신·투신사건 관련 신문기사)제출 / 검찰 / 444  
 자료 다-2-9 검증조서(김형영의 뇌물수수사건 기록, 92.3.27.) / 445  
 자료 다-2-10 증거목록(김형영의 뇌물수수사건 기록, 92.3.27.) / 446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증기록(국과수 문서분석실) 92. 3. 27.

- 자료 다-2-11 검증조서 / 447  
 자료 다-2-12 증거목록기록 / 448  
 자료 다-2-13 증제26의 3, 발송대장 / 450  
 자료 다-2-14 증제26의 4-1, 문서감정서철 표지 / 457  
 자료 다-2-15 증제26의 4-2, 색인목록 / 459  
 자료 다-2-16 증제26의 4-3, 기안용지(1991.8.3.) / 460  
 자료 다-2-17 증제26의 4-4, 감정서(1991.8.3.) / 461  
 자료 다-2-18 증제26의 4-5, 감정서(1991.7.24.) / 464  
 자료 다-2-19 증제26의 4-6, 기안용지(1991.7.4.) / 466  
 자료 다-2-20 증제26의 4-7, 감정서(1991.7.4.) / 467  
 자료 다-2-21 증제26의 4-8, 감정서(1991.6.27.) / 470  
 자료 다-2-22 증제26의 4-9, 기안용지(1991.5.29.) / 472  
 자료 다-2-23 증제26의 4-10, 감정서(1991.5.29.) / 473

- 자료 다-2-24 증제26의 4-11, 감정의회(1991.5.21.) / 478  
 자료 다-2-25 증제26의 4-12, 감정의회(1991.5.28.) / 480  
 자료 다-2-26 증제26의 4-13, 보충질의(1991.5.27.) / 481  
 자료 다-2-27 증제26의 4-14, 감정의회(1991.5.27.) / 482  
 자료 다-2-28 증제26의 4-15, 기안용지(1991.5.25.) / 483  
 자료 다-2-29 증제26의 4-16, 감정서(1) (1991.5.25.) / 484  
 자료 다-2-30 증제26의 4-17, 감정서(2) (1991.5.25.) / 487  
 자료 다-2-31 증제26의 4-18, 결취선 일치여부 의뢰(1991.5.24.) / 488  
 자료 다-2-32 증제26의 4-19, 감정의회(1991.5.23.) / 489  
 자료 다-2-33 증제26의 4-20, 감정의회(1991.5.21.) / 491  
 자료 다-2-34 증제26의 4-21, 감정의회(1991.5.25.) / 492  
 자료 다-2-35 증제26의 4-22, 기안용지(1991.5.17.) / 494  
 자료 다-2-36 증제26의 4-23, 감정서(1991.5.17.) / 495  
 자료 다-2-37 증제26의 4-24, 감정의회(1991.5.15.) / 498  
 자료 다-2-38 증제26의 4-25, 기안용지(1991.5.15.) / 499  
 자료 다-2-39 증제26의 4-26, 감정서(1991.5.15.) / 500  
 자료 다-2-40 증제26의 4-27, 감정의회(1991.5.13.) / 504  
 자료 다-2-41 증제26의 4-28, 감정의회(1991.5.10.) / 505  
 자료 다-2-42 증제26의 1, 감정문서접수대장 / 506  
 자료 다-2-43 증제26의 2, 문서감정처리부 / 515  
 자료 다-2-44 양후열 제출의 장비 사진 / 523  
 자료 A-26 김기설씨 유서 본인필적 맞다/항소심 친구 증언(동아, 92.3.27.) / 531

### 항소심 3회 공판기록 92. 3. 30.

- 자료 다-3-1 3회 공판조서 533  
 자료 다-3-2 증인신문조서 / 안해정 / 533  
 자료 다-3-3 증인신문조서 / 양후열 / 544  
 자료 다-3-4 국과수 장비사진 설명 / 양후열 / 558  
 자료 다-3-5 시필에 부적합성 문헌 / 양후열 / 558  
 자료 다-3-6 증인신문조서 / 김형영 / 559  
 자료 다-3-7 변호인 신문에 대한 이의신청 / 검사 / 587  
 자료 다-3-8 재판부에 의한 변호인측 신문제한 내용 / 587  
 자료 다-3-9 재판부에 의한 검사측 신문제한 내용 / 588  
 자료 다-3-10 감정의뢰, 감정회보 등 관련 비교내역표 / 변호인 / 589  
 자료 다-3-11 증거목록 제출 / 검사 / 592  
 자료 다-3-12 변호인제출 필적감정 신청의견 / 검사 / 594  
 자료 다-3-13 증거자료(신문기사) 제출 / 검사 / 594  
 자료 다-3-14 참고자료(5.24 중앙일보) 제출 / 검사 / 594  
 자료 다-3-15 참고자료(이창열의 공소장 및 판결문) 제출 / 검사 / 595

- 자료 다-3-16 참고자료(김형영 감정 공정성 검토결과 의견서) 제출 / 검사 / 600  
 자료 A-26 필적감정 「주관청 판정, 인정/김실장 증언」 (동아, 92.3.31.) / 608

### 2심 4회 공판기록 92. 4. 2.

- 자료 다-4-1 4회 공판조서 / 609  
 자료 다-4-2 홍성은 모 편지 / 609  
 자료 A-28 해설: 국과수 공신력 재심판 받는다 (동아, 92.4.3.) / 610

### 2심 5회 공판기록 92. 4. 9.

- 자료 다-5-1 5회 공판조서 / 611  
 자료 다-5-2 증인신문조서 / 한원석 / 612  
 자료 다-5-3 증인신문조서 / 이영수 / 618  
 자료 다-5-4 피고인 보충신문 / 621  
 자료 다-5-5 강기훈 최후진술서 / 624  
 자료 다-5-6 검찰 논고문 / 627  
 자료 다-5-7 변론요지서 / 636  
 자료 다-5-8 증거제출, 전화가입자에 대한 사실조회 / 검사 / 669  
 자료 다-5-9 참고자료 제출 / 변호인 / 669  
 자료 다-5-10 국과수 훈령·예규집/국과수 사무분장규정 / 669  
 자료 다-5-11 국과수 감정결과를 배척 무죄선고 / 변호인 제출자료 5 / 671  
 자료 다-5-12 증거법의 원칙에 관한 판례 / 변호인 제출자료 6 / 672  
 자료 다-5-13 이세용이 의뢰한 이익주의 감정서 / 변호인 제출자료 7-1 / 674  
 자료 다-5-14 대전지법 증인신문(이익주) / 변호인 제출자료 7-2 / 674  
 자료 A-29 강기훈씨 7년 구형/유서대필 항소심(동아, 92.4.10.) / 681  
 자료 다-5-15 공판절차 재개신청 / 변호인, 92.4.13. / 682  
 자료 A-29 "김기설씨 필적 검찰 증거확보뒤 은폐 (동아, 92.4.12.) / 684  
 자료 B-19 검찰은 은폐해온 고 김기설씨의 필적을 공개하고... (공대위, 92.4.13.) / 685  
 자료 다-5-16 참고자료 제출, 공판절차 재개신청에 대하여 / 검사, 92.4.14. / 687  
 자료 다-5-17 추가의견서(논고문) 제출 / 검사, 92.4.9. / 695  
 자료 다-5-18 서기선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 검사, 92.4.16. / 696  
 자료 A-30 명동성당 앞 규탄집회/강기훈씨 석방 공대위(동아, 92.4.15.) / 698  
 자료 B-19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400인 선언(92.4.16.) / 699  
 자료 B-20 유서사건 공정재판 촉구(92.4.15.) / 704

### 2심 6회 공판기록 92. 4. 20.

- 자료 다-6-1 6회 공판조서 / 706  
 자료 다-6-2 판결문 / 판사 / 707

- 자료 A-31 강기훈씨 3년 선고(동아, 92.4.21.) / 724  
 자료 A-32 해설: 국과수감정 공신력 인정 (동아, 92.4.21.) / 725  
 자료 B-21 성명서(강기훈 공대위, 92.4.20.) / 726  
 자료 다-6-2 상고장 / 변호인, 92.4.22.) / 727  
 자료 다-6-3 상고장 / 강기훈, 92.4.21.) / 727  
 자료 B-22 Appeal on behalf of Kang Ki-hun (amnesty international, 92.4.) / 728

## 대법원 공판기록

- 자료 라-0-1 상고이유서(강기훈, 92.6.) / 734  
 자료 라-0-2 상고이유서(변호인, 92.6.17.) / 742  
 자료 라-0-3 상고이유 보충서(변호인, 92.7.13.) / 750  
 자료 B-22 탄원서(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 92.7.16.) / 776  
 자료 B-23 탄원서(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92.7.21.) / 776  
 자료 라-1-1 판결문(대법원, 92.7.24.) / 777  
 자료 A-33 강기훈씨 유죄확정/대법원(동아, 92.7.25.) / 785  
 자료 A-34 해설: 대법원 강기훈씨 원심확정 배경 (동아, 92.7.25.) / 786  
 자료 B-24 성명서: 범죄자는 ... 검찰과 법원이대(강기훈 공대위, 92.7.24.) / 787  
 자료 B-25 논평: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정의구현전국사제단, 92.7.24.) / 788  
 자료 B-26 성명서: 강기훈 상고심 기각에 대하여(KNCC 인권위, 92.7.24.) / 789  
 자료 B-27 성명서: 김형영씨 석방에 대한(KNCC 인권위, 92.9.14.) / 790

## 변호인제출 필적자료

- 증제 1 터사랑 청년학우회 창립대회 방명록(김기실) / 791  
 증제 2 이력서(김기실) / 792  
 증제 3 전고조 원주지회 방명록(김기실) / 793  
 증제 4 대유공전 원고(김기실, 일부수록) / 794  
 증제 5 송의여전 메모(김기실) / 798  
 증제 6 출장비 청구서(김기실) / 799  
 증제 7 성남민청련 상황일지(김기실등) / 800  
 증제 8 녹취록(김기실 등) / 811  
 증제 9 속초동우전문대 자료 봉투(김기실) / 822  
 증제 10 수원민청련 창립대회 방명록(김기실) / 823  
 증제 11 한국사회와 자본론강의 책 표지(김기실) / 824  
 증제 12 속초동우전문대·청주서원대 필적(김기실) / 826  
 증제 13-1 명함(김기실) / 827  
 증제 13-2 박동희 자술서 / 828  
 증제 13-1,2 명함(김기실), 고상만 진술서 / 829  
 증제 15-1~10 강기훈 옥증편지 / 830

- 증제 16-1,2 강기훈 연하장 / 850  
 증제 17 민중당 성등지구당 보고서(강기훈) / 854  
 증제 18 장미의 이름 책속 메모(강기훈) / 855  
 증제 20-1 5/8 수첩복사본(이호경 제출) / 856  
 증제 20-2 5/8 수첩복사본(최경환 제출) / 858  
 증제 23-1,2 각서(김기실) 및 한원석 자술서 / 860

\* 찾아보기 / 863





복사본

상 고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소송기록		
		쌍방 항소	
사 건 번 호	92노 401호	담 임 2	주 심 나
사 건 명	가. 자살방조 나. 국가보안법 위반		
검 사		92형 401	
피 고 인	구속 강 기 훈(일명: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변 호 인	사 선 : 유현석, 김창국, 이석태, 한기찬, 박용일, 이범열, 이세중, 함정호, 조준희, 고영구, 홍성우, 최영도, 황인철, 조영환, 박재승, 김형태, 조용환, 박연철, 백승현, 이종걸		
원심 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구공판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제1심소송기록		
		항 소	
사 건 번 호	92고합 1126호(91고합 1328 병합)	담 임 25부	주 임 나
사 건 명	자살방조		
검 사	신 상 규	91형 46779	
피 고 인	구속 강 기 훈(姜基勳) (일명: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변 호 인	사 선 : 유현석 외 14명, 강철선		
원심 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목 록			『총자료집』 쪽 수
문 서 명	장 수	비 고	
증거목록	1	검 사	6
"	18	변 호 인	18
공 소 장	31	검 사	27
변호인 선임신고서	40	변호사) 유현석 외 14명	30
"	57	변호사 강철선	30
녹취허가 신청	61	변)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48
공 판 조 서 (제 1 회)	67		54
공 판 조 서 (제 2 회)	147		86
공 판 조 서 (제 3 회)	179		94
공 판 조 서 (제 4 회)	211		102
공 판 조 서 (제 5 회)	323		134
공 판 조 서 (제 6 회)	390		148
공 판 조 서 (제 7 회)	449		164
공 판 조 서 (제 8 회)	531		186
공 판 조 서 (제 9 회)	679		225
공 판 조 서 (제 10 회)	957		248
공 판 조 서 (제 11 회)	975		257
공 판 조 서 (제 12 회)	1166		321
판 결	1167		321
서울고등법원			
항 소 장	1224	피고인 강기훈	345
"	1226	피)강기훈의 대표 변호사 유현석	345
"	1227	검 사	345
변호인 선임신고서	2233	변) 유현석 외 2	345
항소이유서	2243	검 사	355
"	2250	변호인	357

서울형사지방법원 목 록			『총자료집』 쪽 수
문 서 명	장 수	비 고	
항소이유서	2276	피고인	365
변호인 선임신고서	2303	변)유현석 외 19	365
공 판 조 서 (제 1 회)	2310		374
공 판 조 서 (제 2 회)	2375		387
검 증 조 서	2583	서울지검	III책 163
검 증 조 서	316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447
공 판 조 서 (제 3 회)	3258		533
공 판 조 서 (제 4 회)	3648		609
공 판 조 서 (제 5 회)	3655		611
공 판 조 서 (제 6 회)	3853		706
판 결	3855		707
대 법 원			
상 고 장	3928	변호인 유현석 외 2	734
"	3930	피고인	734
구 속 관 계			
구 속 영 장	36	피)강기훈	28
구 속 기 간 연 장 결 정	39-1		30
구 속 기 간 갱 신 결 정(1차) (92조)	39-2		30
구 속 기 간 갱 신 결 정(2차) (92조)	39-5		30
서울고등법원			
구 속 기 간 갱 신 결 정 (105조)	39-8		30
	39-11		30
대 법 원			
구 속 기 간 갱 신 결 정 (105조)	39-14		30

☐자료 나-0-3 (공판기록 1~16)

\* 복사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누락된 것이 많으며, 오기가 있을 수 있음(편집자 주)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고합 1126, 1328 신청인 검사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1 회 (수) 710, 730, 760, 777, 846, 963, 983장	검 찰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사실	2 회	채		2 회	성립 인정 임의성 부인		2 회	내용고지		91년형 제46979호
1 회 (수) 647, 756, 930장	피의자 자술서 검 찰	"	3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94장	검 찰 진술조서 (양경숙)	"	2 회	채		2 회			2 회			"
1 회 (수) 102장	" (윤여덕)	"	7 회	부		2 회	부 동의		회			"
1 회 (수) 113장	" (정삼정)	"	2 회	채		2 회	부 동의		2 회			"
1 회 (수) 166장	" (장병호)	"	4 회	채		2 회	부 동의		4 회	내용고지		"
1 회 (수) 219장	" (강병숙)	"	2 회	채		2 회			2 회	내용고지		"
1 회 (수) 230장	" (이재구)	"	3 회	채		2 회			3 회	내용고지		"
1 회 (수) 246장	홍성은 진술서 검 찰	"	7 회	채		2 회	부 동의		7 회	내용고지		"
1 회 (수) 248, 425, 566장	검 찰 진술조서 (홍성은)	"	7 회	"		2 회	"		회	"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고합 1126, 1328 신청인 검사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1 회 (수) 386, 403, 422장	홍성은 자술서 검 찰	공소사실	7 회	채		2 회	부 동의		2 회	내용고지		91년형 제46979호
1 회 (수) 404, 442장	이영미 진술서 검 찰	"	2 회	채		2 회	동 의		2 회			"
1 회 (수) 454장	검 찰 진술조서 (이영미)	"	2 회	채		2 회	동 의		2 회			"
1 회 (수) 586, 600, 621장	이보령 자술서 검 찰	"	2 회	"		2 회	"		2 회			"
1 회 (수) 604, 623장	민수진 자술서 검 찰	"	2 회	"		2 회	"		2 회			"
1 회 (수) 277장	김문정 진술서 검 찰	"	2 회	"		2 회	"		2 회			"
1 회 (수) 325장	이지혜 진술서 검 찰	"	2 회	"		2 회	"		2 회			"
1 회 (수) 332장	송국영 "	"	2 회	"		2 회	"		2 회			"
1 회 (수) 484장	최규성 진술서 검 찰	"	2 회	"		2 회	"		2 회	내용고지		"
1 회 (수) 515장	박세용 "	"	2 회	"		2 회	"		2 회	"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고합 1126, 1328 신청인 검사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1 회 (수) 615, 627장	최수미 진술서 검 찰	공소사실	2 회	채		2 회	동 의		2 회	내용고지		91년형 제46979호	
1 회 (수) 708-1장	이 정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708-5장	검 찰 진술조서 (이 정)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740장	이종원 자술서 (검찰)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804장	이보은 자술서 (검찰)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817장	검 찰 진술조서 (이보은)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829장	김병희 진술서 (검찰)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838장	검 찰 진술조서 (김병희)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855, 864장	김형민 자술서 (검찰)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873장	정윤서 자술서 (검찰)	"	2 회	"		2 회	"		2 회	"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고합 1126, 1328 신청인 검사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1 회 (수) 955장	검 찰 진술조서 (임무영)	공소사실	2 회	채		2 회	동 의		2 회	내용고지		91년형 제46979호	
1 회 (수) 993장	최재인 자술서 (검 찰)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999장	검 찰 진술조서 (최재인)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1014 장	전현철 자술서 (검 찰)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1018 장	검 찰 진술조서 (전현철)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1037 장	윤석순 자술서 (검 찰)	"	2 회	부		2 회	부 동 의		회	"		"	
1 회 (수) 1043 장	검 찰 진술조서 (김점렬)	"	11 회	"		2 회	"		회	"		"	
1 회 (수) 1050 장	" (김정열)	"	4 회	채		2 회	"		4 회	내용고지		"	
1 회 (수) 1080 장	" (안해정)	"	2 회	"		2 회	동 의		2 회	"		"	
1 회 (수) 499장	범죄현장 지문감정 의뢰회보 (이장홍)	"	11 회	부		2 회	부 동 의		회	"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고합 1126, 1328 신청인 검사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1 회 (수) 50장	감정의뢰 회보 (임미애·심미옥)	공소사실	2 회	채		2 회	동 의		2 회	내용고지		91년형 제46979호
1 회 (수) 513장	" (이영애)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581장	" (김종진)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352, 409장	필적감정 의뢰회보 (김형영)	"	4 회	채		2 회	부 동의		4 회	내용고지		"
1 회 (수) 535, 536, 534장	필적등 감정 의뢰회보 (김형영)	"	4 회	"		2 회	"		4 회	"		"
1 회 (수) 46 장	검 사 현장검증 조서	"	2 회	채		2 회	동 의		2 회	"		"
1 회 (수) 62 장	검 사 검시조서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191장	검 사 실황조서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19 장	경 찰 진술조서 (정삼경)	"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72 장	" (임근재)	"	2 회	"		2 회	"		2 회	"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고합 1126, 1328 신청인 검사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1 회 (수) 39 장	의사 김승호 작성의 사체검안서 (김기설)	공소사실	2 회	채		2 회	동 의		2 회	내용고지		91년형 제46979호
1 회 (수) 579장	범 죄 경력조사	전과사실	2 회	"		2 회	"		2 회	"		"
1 회 (수) 87 장	분신 당시 김기설 유류품 19점 (중제1-1~19호)	공소사실	2 회	"		2 회	1-5, 8, 9, 11, 14-16, 18, 19, 동 의		2 회	제 시		"
1 회 (수) 93 장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점(중제2-1호)	"	7 회	채		7 회	6, 7, 10, 17 동 의		2 회	제 시		"
1 회 (수) 175장	채표지 2매 (중제 3-1호)	"	7 회	"		7 회	"		7 회	"		"
1 회 (수) 179장	90년 민족민주 운동의 평가와 91년 전망 1권 (중제4-3호)	"	7 회	"		7 회	"		7 회	"		"
1 회 (수) 217장	업무일지 1권 (중제 5-1호)	"	7 회	"		7 회	"		7 회	"		"
1 회 (수) 285장	'조국은 하나' 수첩 1권 (중제 7-1호)	"	7 회	"		7 회	"		7 회	"		"
1 회 (수) 288장	메모지 2장 (중제 7-2호)	"	7 회	"		7 회	"		7 회	"		"
1 회 (수) 276장	서울지검 북부 지청 85형제 43 084호 기록 1권 (중제 8-1호)	"	2 회	채		2 회	동 의		2 회	제 시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고합 1126, 1328 신청인 검사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1 회 (수) 330장	강기훈집 압수품 128점 (중제1-128호)	공소사실	2 회	채		2 회	2-5, 7, 11-15, 17, 21, 22, 26, 27, 29-110		2 회	91, 95, 98, 100, 101, 103, 104 제시 및 내용고지 나머지 제시		91년형 제46979호
			7 회	채		7 회	나머지 동의		7 회	111-116, 123, 125 중 ㉠-㉡ 제시 및 내용고지 나머지 제시		
1 회 (수) 488장	이력서 1매 (중제 10-1호)	"	7 회	채		7 회	동 의		7 회	제 시		
1 회 (수) 504장	'조국은 하나' 수첩 1권 (중제1-1~19호)	"	7 회	"		7 회	"		7 회	"		
1 회 (수) 535장	유인물 복사본등 9점 (중제12-1~9호)	"	2 회	채		2 회	1-4, 7-9 동 의		2 회	제 시		"
			7 회	채		7 회	5, 6 동 의		2 회	제 시		
1 회 (수) 526장	연말카드 편지 2점 (중제13-1~2호)	"	7 회	채		7 회	동 의		7 회	제 시		
1 회 (수) 379장	경 찰 압수조서	"	7 회	"		7 회	"		7 회	내용고지		
1 회 (수) 217장	업무일지 1권 (중제 5-1호)	"	7 회	"		7 회	"		7 회	"		
2 회 (수) 732, 774, 782, 813장	검 사 피 의 자 신문조서	공소사실	3 회	채		3 회	부 동 의		3 회			91년 형제 7695호 제2책 제2권
			3 회	채		3 회	동 의		3 회			
2 회 (수) 828, 830장	공판조서 등본 (박대호)	"	3 회	"		3 회	동 의		3 회			
1 회 (수) 902, 905장	" (노성철)	"	3 회	"		3 회	"		3 회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고합 1126, 1328 신청인 검사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2 회 (수) 935장	제1심 판결문 등본 (박대호)	공소사실	3 회	채		3 회	동 의		3 회	내용고지		91년 형제 17695호 제2책 제2권
2 회 (수) 948장	제2심 " (박대호)	"	3 회	"		3 회	"		3 회	"		"
2 회 (수) 955장	제1심 판결문 등본 (노성철)	"	3 회	"		3 회	"		3 회	"		"
2 회 (수) 1111장	제2심 " (노성철)	"	3 회	"		3 회	"		3 회	"		"
2 회 (수) 232, 249, 251, 277, 281, 286, 323, 477, ???, ??? 장	"	"	3 회	부		3 회	성립인정 임의성 및 내용 부인		회			91년 형제 17695호 제2책 제1권
2 회 (수) 218, 222장	피의자 자술서 (경 찰)	"	3 회	"		3 회	"		회			"
2 회 (수) 153장	??? 진술조서 (박대호)	"	3 회	채		3 회	????		3 회	내용고지		"
2 회 (수) 164장	" (노성철)	"	3 회	"		3 회	"		3 회	"		"
2 회 (수) 191장	" (이종원)	"	3 회	"		3 회	"		3 회	"		"
2 회 (수) 376장	검 찰 진술조서 (김경숙)	"	3 회	"		3 회	"		3 회	"		"







☐자료 나-0-5 (공판기록 18~29)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 고합126, 1328 신청인 변호인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5 회 별 첨 장	청구서 (김기설) (중제6호)	변소사실	8 회	채		7 회	부동의		8 회	제 시		
5 회 장	상황일지 11매 (성남민청련) (중제7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노트 (김기설 등) (중제8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대봉투 (김기설 등) (중제9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방명록 (수원민주화청년연합) (중제10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책(한국사회와 자본론 강의) (김기설) (중제11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파일표지 (김기설) (중제12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명함(1) (김기설) (중제13-1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자술서 (박동희) (중제13-2호)	"	8 회	"		7 회	"		회	"		
5 회 장	명함(2) (김기설) (중제14-1호)	"	8 회	"		7 회	"		회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 고합126, 1328 신청인 변호인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5 회 별 첨 장	자술서 (고상만) (중제14-2)	변소사실	8 회	채		7 회	부동의		8 회	제 시		
5 회 장	우편봉합엽서 (강기훈) (중제5-1 내지 10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카드(봉투 및 내용) (강기훈) (중제16-1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카드(봉투 및 내용) (강기훈) (중제16-2)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보고서 (강기훈) (중제17호)	"	11 회	부		7 회	"		회	"		
5 회 장	책(장미의 이름) (강기훈) (중제18호)	"	8 회	채		7 회	"		8 회	제 시		
5 회 장	감정서 (大西芳雄) (중제19-1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감정물건사전첩 (大西芳雄) (중제19-2호)	"	8 회	"		7 회	"		8 회	"		
5 회 장	증인 이지혜	김기설 분신 전의 정황 등	7 회	부		회	"		회	"		
5 회 장	증인 이보은	김기설 분신 전의 정황, 전민련 수첩 보관 및 제출 경위 등	7 회	"		회	"		회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 고합126, 1328 신청인 변호인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5 회 (공) 555 장	증인 이영미	김기설 분신 후의 강기훈 주변 등 정황 관계 및 서증입증	7 회	채		8 회	1991. 11. 20. 10:00		8 회	1991. 11. 20. 10:00		
5 회 장	증인 김범열	김기설 분신 후의 홍성은 주변 등 정황 관계	6 회	부		회			6 회	철 회 취 소		
5 회 (공) 382 장	증인 김시중	상남 타사광 창년회 방명록 등의 김기설 필적	5 회	채		6 회	1991. 11. 6. 10:00		6 회	1991. 11. 6. 10:00		
5 회 (공) 640 장	증인 김병희	상남 타사광 창년회 방명록 등의 김기설 필적	7 회	"		8 회	1991. 11. 20. 10:00		8 회	1991. 11. 20. 10:00		
5 회 장	증인 전현철	상남 타사광 창년회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	7 회	부		회			회			
5 회 장	증인 곽대순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	7 회	"		회			회			
5 회 (공) 408 장	증인 홍중희	"	5 회	채		6 회	1991. 11. 6. 10:00		6 회	1991. 11. 6. 10:00		
5 회 (공) 419 장	증인 박찬수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의 압수경위 등	5 회	"		6 회	1991. 11. 6. 10:00		6 회	1991. 11. 6. 10:00		
5 회 장	증인 박선옥	김기설 필적자료 등 서증입증	7 회	부		회			회			
5 회 (공) 555 장	증인 박경민	김기설 분신 전 정황 및 대우공전 원고의 김기설 필적	7 회	채		8 회	1991. 11. 20. 10:00		8 회	1991. 11. 20. 10:00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1 고합126, 1328 신청인 변호인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5 회 (공) 533 장	증인 이보령	승의여전 메모의 작성 및 제출경위	7 회	채		8 회	1991. 11. 20. 10:00		8 회	1991. 11. 20. 10:00		
5 회 장	증인 최수미	승의여전 메모의 김기설 필적	7 회	부		회			회			
5 회 장	증인 김지연	"	7 회	"		회			회			
5 회 (공) 428 장	증인 강효남	수원 민청련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 등	5 회	채		6 회	1991. 11. 6. 14:00		6 회	1991. 11. 6. 14:00		
5 회 장	증인 김희택	"	5 회	"		6 회	"		6 회	철 회 취 소		
5 회 장	증인 이창희	상남 민청련 상항일지의 김기설 필적등	7 회	부		회			회			
5 회 (공) 438 장	증인 정일부	"	5 회	채		6 회	1991. 11. 6. 14:00		6 회	1991. 11. 6. 14:00		
5 회 장	증인 장준호	김기설 분신 전 정황 및 속주 동우원대 누워 노트 속의 김기설 필적	7 회	부		회			회			
5 회 장	증인 김용삼	명함의 김기설 필적 등	5 회	채		6 회	1991. 11. 6. 10:00		6 회	철 회 취 소		
5 회 (공) 620 장	증인 고상만	"	7 회	채		8 회	1991. 11. 20. 14:00		8 회	1991. 11. 20. 14:00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91 고평126, 1328 신청인 변호인		(공판조서 일부)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5 회 (공) 610 장	증인 임무영	간기설 분산전 상항 및 어부일지 필적관계 등	7 회	채		8 회	1991. 11. 20. 14:00		8 회	1991. 11. 20. 14:00		
5 회 장	증인 권태평	간기설 분산과 관련한 강기훈 주변관계 강기훈 육중편지 등의 필적 등	7 회	부		회			회			
5 회 (공) 582 장	증인 서준식	간기설 분산 후의 전민련 주변관계 업무일지 계출경위 등	7 회	채		8 회	1991. 11. 20. 14:00		8 회	1991. 11. 20. 14:00		
5 회 (공) 625 장	증인 이동진	간기설 분산 후의 전민련 주변관계 업무일지 내용 일부 작성경위 등	7 회	"		8 회	"		8 회	"		
5 회 (공) 666 장	증인 최경환	전민련 수첩의 간기설 필적 등	7 회	"		8 회	"		8 회	"		
5 회 (공) 682 장	증인 이효경	"	7 회	"		8 회	"		9 회	1991. 11. 27. 10:00		
5 회 (공) 701 장	증인 오오시 요시오	감정서에 관한 사항	9 회	채		회			9 회	1991. 11. 27. 10:00		9회 재정 증인
5 회 장	증인 김현수	전민련 수첩 및 업무일지 관계	7 회	부		회			회			
5 회 장	증인 원순용	전민련 수첩관계	7 회	"		회			회			
5 회 장	증인 최재인	"	7 회	"		회			회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91 고평126, 1328 신청인 변호인		(공판조서 일부)										
기 일 및 장 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 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5 회 장	증인 김형민	간기설 강기훈 업무분장 및 서증일증 등	7 회	부		회			회			
5 회 장	증인 박동희	서증(명함) 입증	5 회	채		6 회	1991. 11. 6. 11:00		회			
5 회 장	증인 김영주	일본에 감정의뢰한 경위	7 회	부		회			회			
5 회 (공) 461 장	증인 홍성은	변소사실	5 회	채		6 회	1991. 11. 6. 10:00		7 회	1991. 11. 7. 14:00		쌍 방 신청
6 회 별첨 장	수첩사본 1매 (증제20-1호)	"	7 회	"		7 회	동 의		7 회	제 시		
6 회 장	수첩사본 1매 (증제20-2)	"	7 회	"		7 회	"		7 회	"		
6 회 장	사진 2매 (증제21호)	"	7 회	"		7 회	"		7 회	"		
8 회 장	사진 2매 (증제22호)	변소사실	8 회	채		8 회	부동의		8 회	제 시		
8 회 장	각서(간기설) 1매 (증제23-1호)	"	8 회	"		6 회	"		8 회	"		
8 회 장	자술서(한원석) 2매 (증제23-2)	"	8 회	"		8 회	"		8 회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거 목록												
91 고합1126, 1328 신청인 변호인 (공판조서 일부)												
기일 및 장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8 회 별첨장	동우전문대 사건진상보고서 (증제24)	변소사실	8 회	채		8 회	부동의		8 회	제시		
9 회 (공) 701 장	증인 오오시 요시오	감정서에 관한 사항	9 회	채		10 회	1991. 11. 28. 10:00		10 회	1991. 11. 28. 10:00		

☐자료 나-0-6 (공판기록 30~30-2)

서울고등법원 증거 목록												
92 노 401 신청인 피고인 및 변호인 (공판조서 일부)												
기일 및 장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1 회 별첨장	편지 (증제25)	변소사실	5 회	부		3 회	부동의		3 회	제시		
1 회 (공) 339 장	증인 김형영	감정경위	1 회	채		2 회	92.3.26. 14:00		3 회	92.3.30. 14:00		
1 회 (공) 328 장	증인 양후열	"	1 회	채		2 회	92.3.26. 14:00		3 회	92.3.30. 14:00		
1 회 (공) 2377 장	증인 (한승홍)	변소사실	1 회	채		2 회	92.3.26. 14:00		2 회	92.3.26. 14:00		
1 회 (공) 2508 장	증인 권범재	"	1 회	채		2 회	"		2 회	"		

서울고등법원 증거 목록												
92 노 401 신청인 피고인 및 변호인 (공판조서 일부)												
기일 및 장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1 회 · 장	증인 홍성은	변소사실	1 회	채		3 회	92.3.30. 14:00		4 회	절회, 취소		
1 회 (공) 2411 장	증인 이지혜	"	1 회	"		3 회	"		2 회	92.3.26. 14:00		
1 회 (공) 2476 장	증인 이보은	"	1 회	"		3 회	"		2 회	"		
3 회 · 장	증인 조병길	국과수 문서감정 신빙성 탄핵	1 회	부		회			회			
1 회 (공) 2587 장	기록검증 (김형영 형사기록)	필적감정의 신빙성, 증명력 탄핵	1 회	채		법정의회	92.3.23. 15:00		법정의회	92.3.27. 10:00		3회 기일 조서 현출 내용고지
1 회 (공) 3774 장	기록검증 (국과수 감정의회 서 등 서류일체)	감정경위 등	1 회	"		법정의회	92.3.23. 16:00		법정의회	92.3.27. 11:00		"
1 회 · 장	기록검증 (이창열 형사기록)	필적감정의 신빙성, 증명력 탄핵	2 회	부		회			회			
3 회 (공) 2577 장	검증기록사본 (김형영 형사기록 (증27의 1-38))	"	4 회	채		4 회	동의		4 회	내용고지		
3 회 (공) 3174 장	검증기록사본 (국과수 발상당 등 (증26의 1-4, 28회))	"	4 회	"		4 회	"		4 회	"		
4 회 별첨장	감정서 (김형영) (증28-1)	"	5 회	부		4 회	부동의		회			

서울고등법원 증거 목록 (공판조서 일부)												
92 노 401 신청인 피고인 및 변호인												
기일 및 장수	증거방법	입증취지	증거결정			의견 (지정기일)			증거조사 (조사기일)			비 고
			기 일	채 부	인	기 일	내 용	인	기 일	내 용	인	
4 회 별첨 장	감정서 (한국인변인연합회) (증28의 2)	필적감정의 신빙성, 증명력 탄핵	5 회	부		4 회	부동의		회			
4 회 별첨 장	매도증서 (증29의 3, 4)	,	5 회	,		4 회	,		회			
4 회 별첨 장	필름 및 사본 (증제29의 5, 6)	,	5 회	,		4 회	,		회			
4 회 (공) 3575 장	증인 한원석	변소사실	4 회	채		5 회	9249. 1400		5 회	9249. 1400		
5 회 별첨 장	신문발행사본 (증제29의 1, 2, 3)	필적감정의 신빙성, 증명력 탄핵	1 회	채		5 회	동 의		5 회	제 시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자료 나-0-7 (공판기록 31~35)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 46779호 1991. 7. 12.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검사 신상규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피고인  
①본 적 서울  
②주 거 서울  
③직 업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④주민등록번호  
⑤성 명 강기훈(姜基勳, 일명:이현  
우, 김정훈, 상수, 상우)  
⑥생년월일 1964. 3. 29.생 (27세)  
⑦적 명 자살방조  
⑧적용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⑨신 병 1991. 6. 24 구속  
⑩변 호 인 변호사 : 유현석 외 14명

- 첨 부  
1. 구속영장 1통  
2. 변호인 선임신고서 1통  
3. 구속기간 연장결정 1통

공 소 사 실

피고인 강기훈은 1982. 3.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5. 8. 31. 학사경고 제적을 당한  
자로서 단국대학교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민주정부수  
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약칭:삼민투  
위)" 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중 1984. 11. 5. 서울형사지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 46779호 1991. 7. 12.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신상규

피고인  
본 적 서울  
주 거 서울  
직 업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주민등록번호  
성 명 강기훈(姜基勳) 일명: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생년월일 1964. 3. 29.생 (27세)  
적 명 자살방조  
적용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신 병 1991. 6. 24 구속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외 14명

1991. 6. 24. 구속

구속영장 1통 3. 구속기간 연장결정: 1통  
2. 변호인선임신고서 1통

31

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류  
10일, 1985.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구  
류 10일을 각 선고받고, 1985. 11. 18. 서울 강동구 가  
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에 침입, 농성, 방화  
한 소위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을 주  
동한 혐의로 1986. 3. 28.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  
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  
에서 복역하다가 1987. 7. 8.경 가석방으로 출소(형기  
종료 예정일:1987. 11. 30.)하고, 1988. 12. "노동자계급  
이 중심으로 기층민중이 단결, 무장봉기하여 현정부를  
타도한 후 임시혁명정부를 구성, 사회주의혁명을 완성  
한다"는 등의 강령으로 학생운동권 출신인 공소의 노  
성철, 이종원 등 4명이 결성한 이적단체인 '혁명의 불

꽃' 그룹에 '상우'라는 가명으로 가입하고, 위 단체가 88. 8월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약칭:혁노맹)으로 확대 개편된 후 계속 위 노상철 등과 접촉하면서 '김정훈'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한편 1989. 5경부터 현재까지 '이현우'라는 가명으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전민련)에 가입, 그 총무국 부장직에 있는자인 바, 피고인과 함께 전민련에 근무하는 사회부장 김기설이 1991. 4 중순경 가족들에게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삶의 의욕을 보이다가 같은 달 26.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민중을 자극하여 고조된 반정부투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분신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동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의와 결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신학대학 리포트 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동 김기설은 1982.경 경기 파주군 광탄군 소재 광탄종합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더욱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맑은 현실과는 다르게, 슬프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속에 얻은 결론이겠지요...이하 생략-김기설-"이라는 내용의 유서(1)와 동 김기설은 6세때 생모가 사망한 후 주로 누나 손에서 자라나 생모에 대한 기억은 물론 계모에 대한 정이 전혀 없어 유서의 내용에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큰 누나 김화자를 비롯한 3명의 누나와 3명의 자형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누나들과 자형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아버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일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지껏 한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

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 이제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책위 사무실에 위임하세요. 전민련 선택 이행, 서준식 인권위원장님에게 위임하세요.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택님들입니다. -기설-"이라는 내용의 유서(2)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동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하여 동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과 소위 강경대 사건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동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 놓고 전신에 시너 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소지한 1회용 가스라이타로 불을 붙인 후 약 16.5미터 아래 지상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중인 같은 날 08:20경 전신화상, 전두골물골절, 골반골절 및 두개강내출혈, 골반강내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자료 나-0-8 (공판기록 36~39)

서울형사지방법원  
구 속 영 장

영장번호 6191

사건번호

사건명 자살방조

피의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피 의 자 강기훈(姜基勳, 일명:이현우,

상수, 김명훈)

생년월일 1964. 3. 29.생 (27세)  
직업 전민련 총무부장  
주거 서울

인치구금할 장소 서울구치소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구속한다.

이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의 요구에 의하여 발부한다.

이 영장은 1991년 7월 25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1991. 5. 26.

판사 김 전 중

집행일시 1991년 6월 24일 10시 15분

집행장소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

인치일시 1991년 6월 26일 01시 10분

인치장소 서울구치소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

1991. 6. 26.

서울지검 검찰주사보 라 중 규

범 죄 사 실

피의자 강기훈은 1982. 2. 23. 세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5. 8. 31. 학사경고 제적을 당한 자로서 단국대학교 "군부독재 타도와 민중민주정부수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약칭:삼민투위) 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중 1984. 11.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류 10일을, 198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구류 10일을 각 선고받고, 1985. 11. 18.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에 침입, 농성, 방화한 소위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1986. 3. 28.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7. 11.경 그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현재 이현우라는 가명으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전민련) 총무부장직에 있는자인 바,

1991. 5.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의 망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의와 결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한국신학대학 리포트용지에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위 망 김기설은 1982.경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소재 광탄종합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의자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더욱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맑은 현실과는 다르게, 슬프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속에 얻은 결론이겠지요. 노태우정권을 퇴진해야 합니다...중략...노태우정권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민중권력 쟁취를 위한 행진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어야 합니다.-김기설-"이라는 내용의 유서(1)와, 위 김기설은 5세때 생모가 사망한 후 주로 누나 손에서 자라나 생모에 대한 기억은 물론 계모에 대한 정이 전혀 없어 유서의 내용에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큰누나 김화자를 비롯한 3명의 누나와 3명의 자형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누나들과 자형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아버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일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지껏 한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 이제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책위 사무실에 위임하세요. 전민련 선택 이행, 서준식 인권위원장님에게 위임하세요.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입니다. -기 설-이라는 내용의 유서(2)를 작성하여 그 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망 김기설에게 교부 하여 줌으로써, 위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 대책위에 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망 김기 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 어, 망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 의자가 작성하여 준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 놓고 전신에 썬-너 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후 지상으로 뛰 어내리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케 함으 로써 위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자료 나-0-9 (공판기록 39-1~39-16)

서울형사지방법원  
구속 기간 연장 결정

영장번호

죄 명 자살방조

피 의 자 강 기 훈

생년월일 1964. 3. 29.

직 업 전민련 총무부장

주 거

주 문 1991. 7. 13까지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의 신청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7. 3

판 사 관 태 철

(공판기록 39-2~39-16)

\* 구속기간 갱신결정, 등본영수증 <생략>

91. 8. 14자, 91. 10. 4자, 91. 10. 23자, 92. 2. 18. 자, 92. 4. 21자.

☐자료 나-0-10 (공판기록 40~43)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피 의 자 강 기 훈  
피 고 인

사건번호 91형제 46779

사 건 명 자살방조 등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별지와 같음)씨를 변호 인으로 선임하고 연서하여 이에 신고함.

서기 1991년 6월 20일

선 임 인 피의자의 모 권 태 평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도

주 소 별지 기재와 같음

위 변호인 변호사 별지 기재와 같음

서울지방검찰청 귀 중

1 유 현 석

중

2 고 영 구

3 장 기 옥

4 김 창 국

(공판기록 46~47)

\* 공소장 등사청구서(황인철 변호사), 수사기록 등 사청구서(박연철 변호사) <생략>

5 홍 성 우

6 황 인 철

7 조 영 황

8 한 기 찬

9 박 재 승

10 박 용 일

11 백 승 현

12 이 석 태

13 조 용 환

14 이 중 결

15 박 연 철

\* 강기훈 주민등록등본 <생략> (공판기록 44)

\* 공소장 전달 영수증 <생략> (공판기록 45)



자료 A-1 (등아, 7월 14일)

91.7.14 화

### 社說

#### 유서는 과연 누가 썼는가

유서란 무엇인가? 유서는 유언장이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유언하는 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다. 유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되어 법원의 판결을 거쳐 효력을 인정받는다. 유서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며, 유언자의 사망 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유서는 유언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명시하고, 유언자의 사망 후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서는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유언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서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며, 유언자의 사망 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유서는 유언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명시하고, 유언자의 사망 후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서는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유언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유서는 과연 누가 썼는가

자료 나-0-11

91고합 1126

### 보석 청구서

피고인 성명: 강기훈  
주거: 서울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중)  
생년월일: 1964. 3. 29. 생 (27세)  
직업: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위 피고인은 귀원 91고합 1126 자살방조 피고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오니 심의하시어 청구의 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의 취지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청구의 이유

1.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민련 총무부장으로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이 1991. 4. 26.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운동이 고조되자 민중을 자극하여 고조된 반정부투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분신자살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고, 위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의와 결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일 자불상경 서울 이화 불상지에서 한국신학대 리포트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하여 김기설과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과 소위 강경대사건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김기설의 분신자살결심과 결의를 용이하게 도와주어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 놓고 전신에 시너 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소지한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약 16.5미터 아래 지상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중인 같은 날 08:20경 전신화상, 전두골 합몰골절, 골반골절 및 두개강내출혈, 골반강내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은 그 발생초기부터 수사 종결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대한 지적적 관심을 야기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들은 그동안의 접견 및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의 그와같은 확신을 뒷받침하듯이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경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은 검찰이 추정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는 채 19일 동안을 협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여 보았으나 여전히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자수하기 전 표명한 바와 같은 일체의 진술 거부권을 유지한 결과도 아닙니다.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그 자체의 내용으로써는 범행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재야 운동권의 활동을 약화시킬 의도로 구체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추정사실에 입각하여 피고인을 구속하고 기소한 것은 피고인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위

91.7.11 목

### 법정 「형식 확인판」

본 법원은 91.7.11 목자로 91고합 1126 호로 유서 2매를 작성하여 준 혐의로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보석청구사건을 심리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피고인은 유서 2매를 작성하여 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이 추정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는 채 19일 동안을 협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여 보았으나, 여전히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자수하기 전 표명한 바와 같은 일체의 진술 거부권을 유지한 결과도 아닙니다.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강기훈은, 위 유서 2매를 작성하여 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이 추정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는 채 19일 동안을 협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여 보았으나, 여전히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자수하기 전 표명한 바와 같은 일체의 진술 거부권을 유지한 결과도 아닙니다.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린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소속한 집단을 매도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국민 전체를 기망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무고한 테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감금되었다면 피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인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고한 경우를 상정하여 소송진행의 적절한 방안을 찾으려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3. 피고인의 소위 이 사건 범행은 형사소송법 제55조에 규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살방조죄는 징역 또는 금고 10년이 넘는 법정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 검찰은 이미 공언하고 있는 바 공소유지에 필요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하며, 피고인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단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므로 도주할 염려도 없는 자입니다.

4. 피고인에 대한 보석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이유서를 제출한다거나 심문기일에서의 변론에 의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우선 수사기록에 의하여 엄정한 판단을 하여 주시고 형사소송법 소정의 보석보증금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 7.

위 피고인의 변호인

- 변호사 유 현 석
- 김 창 국
- 조 영 황
- 한 기 찬
- 박 연 철
- 이 석 태
- 이 중 길
- 조 용 환

백 승 헌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5부 귀 중

☐자료 나-0-12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25 부  
결 정

사 건 91초 2688 보석 (91고합 1126 자살방조)  
피고인 강 기 훈 (일명: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1964. 3. 29생

주거 서울

본적 서울

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 김창국, 조영황, 한기찬, 박연철, 이석태, 이종길, 조용환, 백승헌  
피고인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의 망 김기철의 분신 사건 이후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홍성은, 이영미 및 전민련 관계자들이 수사 회합을 갖고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한 사실, 위 김기철의 수첩이 전민련측에 보관되어 있는 사이에 조작된 흔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1991. 5. 26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도 같은 6. 24까지 명동성당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8. 2

재판장 판 사 노 원 옥  
판 사 정 일 서  
판 사 이 영 대

☐자료 A-2 (동아, 7월 18일)

한강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기철(57)은 7월 18일 동아일보에 "강기훈(57)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은 "강기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은 "강기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姜씨 유서代筆은 조작"

KNCC주장 아시아기독교協 필적감정

이강기(57)는 7월 18일 동아일보에 "강기훈(57)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은 "강기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은 "강기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東亞☐

## “金基勳씨 유서”는 自筆

91. 7. 18 동아  
【서울=동아일보 기자 김기철 기자】 김기철(57)은 7월 18일 동아일보에 "강기훈(57)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은 "강기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은 "강기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은 "강기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은 "강기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은 "강기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姜基勳씨  
保釋 신청  
91. 7. 18 동아

姜基勳씨에  
대한민국의  
추가  
91. 7. 15 동아

자료 B-1 (강기훈씨 변호인단 성명, 7월 5일)

강기훈씨 변호인단의 성명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변호인에 대한 압력을 철회하라

1.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이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에 가혹행위를 가하고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

2. 검찰은 강기훈씨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된 1991. 6. 24 11:00경부터 6. 26 02:00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고, 그후에도 매일 오전 일찍부터 자정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하여 오면서 1991. 6. 29.에는 당일 오전부터 다음날인 6. 30. 자정까지 무려 40여시간 가까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 바 있다. 게다가 검찰은 강기훈씨가 극심한 피로와 수면부족으로 졸게 되면 그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 수사방식은 피조사자로 하여금 극도의 수면부족으로 인한 심신의 황폐상태에 이르게 하므로써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가장 혹독한 형태의 가혹행위의 하나인 것이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이러한 검찰의 소위 잠안재우기 수사방식은 고문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25조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이러한 형태의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당연한 요구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3. 한편, 검찰은 변호인단에 속한 특정변호인에 대하여 그 변호인의 강기훈씨 구속전의 조력행위에 관해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직,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심지어는 그 변호인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는 다른 변호인들의 강기훈씨에 대한 접견을 불허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망언까지 일삼고 있다.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제반 조력을 행할 수 있음을 너무나 당연하고 이러한 조력행위가 실정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당연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하여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같은 사실을 언론에 보도케 함으로써 변호인단의 명예까지 침해하고 있는 바 이는 검찰이 강기훈씨 사건의 진실을 왜곡,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변호인의 접견권은 어느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임을 이미 강조한 바 있는 데도 법의 집행자인 검찰 스스로 법을 위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바 이와같은 위법,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991. 7. 5.

강기훈씨의 변호인단  
변호인 유현석 고영구 홍성우

자료 B-2 (국가보안법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 76195호 1991. 8. 21.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종택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피고인 ①본 적 서울 (서울구치소 수감중)
- ②주 거 서울
- ③직 업 전민련 총무부장
- ④주민등록번호
- ⑤성 명 강 기 훈 (姜基勳)
- ⑥생년월일 1964. 3. 29. 생 (27세)
- ⑦죄 명 국가보안법 위반
- ⑧적용법조 (구)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5항, 제1항, 제1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 ⑨신 병 19 . . . 불구속
- ⑩변 호 인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 76195 호 1991. 8. 21.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종택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①본 적 서울 (서울구치소 수감중)

②주 거 서울

③직 업 전민련총무부장

피고인 ④주민등록번호

⑤성 명 강 기 훈 (姜基勳)

⑥생년월일 1964. 3. 29. 생 (27세)

⑦죄 명 국가보안법위반

⑧적용법조 (구)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5항, 제1항, 제1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⑨신 병 19 . . . 불구속

⑩변 호 인 1329

1329

1991. 8. 21

177mm x 266mm (호 2 406/w)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1982. 3.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5. 3. 학사경고 제적을 당한 자로서 단국대학교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민주정부수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약칭:삼민투위)" 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중 1984. 11.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류 10일을, 1985.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구류 10일을 각 선고받고, 동년 11. 18.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연수원에 침입, 농성, 방화한 소위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을 주동하다가 1986. 3. 28.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86. 7. 8. 경 가석방으로 출소하고(형기종료 예정일:1987. 11. 30.), 1989. 4.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약칭:전노운협)의 연대사업부 실무간사로 활동하다가 동년 5월경부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전민

1) 본 『유서사건 총 자료집』에서는 강기훈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기록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본 공소장이 많이 인용되므로 참고자료로 첨부한다.

련)의 민생대책위원회 실무간사로 활동하던 중 1990. 9월부터 전민련 사회국 부장(실무간사), 1991. 3월부터 전민련 총무국 부장(실무간사)으로 활동하며 오던 중 동년 4. 26. 명지대학교 고 강경대 학생의 시위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운동권과 일부 어른에서 이를 소위 공안통치로 빚어진 사건이라 왜곡·성격규정하면서 운동권이 연합, 전열을 정비하고 일부 정당세력까지 끌어들여 연대투쟁을 전개, 1987. 6. 소위 "민중항쟁"과 같은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극도의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계기로 현정부를 타도한 후 민주주의의 민중민주정부의 전단계인 소위 민주연합정부의 수립을 획책하면서 전민련,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전대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전교조),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약칭:전노협) 등 학생·재야·노동계 등 각계 운동권단체가 망라되어 소위 "고 강경대일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라는 회의체 형식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폭력시위를 주도하며 정권퇴진투쟁을 전개하는 혼란 분위기 속에서 동년 5월 초순경 전민련 사회국 부장(실무간사)이던 공소의 망 김기설이 소위 민중민주공화국의 수립을 목표로 민중봉기에 의한 정권타도를 유도하는 기폭제로 산화하고자 5. 8. 어버이날에 분신자살할 것을 기도하자 동인의 유서를 대필하는 등 정치적 목적하에 동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동년 7.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자살방조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91고합 1126호)에 재판계류중에 있는 자인 바,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투쟁으로, 해방 전후사의 역사를 반봉건투쟁과 민족해방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파쇼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하여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농민 등 피지배계층과 도시빈민·청년학생·지식인·중소상인 등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하고, 폭력·비폭력·합법·비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매관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반공정권퇴진,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 12. 20.경 순천교도소에서 동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공소의 박대호('86. 2. 서울대 국사학과 제적), 노성철('89. 2. 연세대 정의과 졸업), 공영운(서울대 경영학과 '83학번), 이재용(성균관대 '83학번), 이종원('88. 9.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김철수(서울대 신문학과 '75학번) 등이 대통령선거 이후의 정세와 전술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대중의 분노를 조직화하여 재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6월 이후 반동정권과 민중간의 권력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는 혁명적 정세이므로 우리의 전술적 구호는 임시혁명정부 수립이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등 1988. 2. 20.경까지 석방 이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혁명적 정세, 임시혁명정부 수립이라는 현재 정세에 대한 과학적 입장과 올바른 전술을 운동진영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기로 모의한 다음, 동년 3월 중순 특별사면으로 함께 석방된 위 박대호, 노성철, 이종원, 공영운, 이재용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전진"그룹 명의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로 하되 그 유인물에 정세분석과 전술 및 투쟁방침과 조직방침 등을 게재하기로 하고, 동년 4. 7.경 "전진"그룹 명의로 "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들자" 제하의 유인물 약 200부를 제작, 서울시내 각 대학 총학생회실 및

민중의 당 인천지구당 등지에 배포하고, 동년 4. 10.경 건국대학교 강의실에서 위 박대호, 노성철, 이종원, 김경숙(외국어대 '80학번) 등이 유인물의 제작명의를 "혁명의 불꽃"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동년 4. 25.경 "혁명주의의 대오를 굳건히" 제하의 유인물 "혁명의 불꽃" 제2호 200부를 제작·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6. 9.경까지 "혁명의 불꽃"그룹 명의로 "혁명적 정세, 임시혁명정부" 등의 제하의 "혁명의 불꽃" 제3호 및 제4호를 제작·배포하여 오던 중 동년 6. 15.경 위 4인이 모여 사상이론지도부(CO)와 실천지도부(CT)로 나누는 그룹체계의 구성을 결정하고 사상이론지도부는 박대호가 맡고 실천지도부는 노성철과 김경숙이 맡아 문건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그룹주변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이종원은 양자를 겸하여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기로 논의한 다음 조직강령을 마련하기로 하고 동년 6. 29.경 서강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박대호가 작성해온 강령초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혁명의 불꽃"그룹의 조직강령으로서,

(최소강령)

0. 파쇼공화국의 타도와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의 건설

- 현 파쇼공화국은 미·일제국주의의 자본의 강도적 약탈과 소수독점재벌의 무한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국주의 무리 등과 독점자본가들의 민중에 대한 파쇼적인 억압과 착취의 도구일 따름이다.
- 파쇼공화국은 언론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제반의 파쇼적 악법을 통하여, 주한미군과 정규군과 특수군인 공수부대 특전단을 통하여, 경찰과 전경, 백골단을 통하여,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등의 정보통치기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등 수탈적인 조세제도와 국채를 통하여, 관료적이고 부패한 행정기구를 통하여, 파쇼공화국인 법률의 입법집행기관인 국회, 사법재판소를 통하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의 기구로서 군림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파쇼세력과 민중간의 비화해성의 산물인 따름인 파쇼공화국의 성격상 파쇼공화국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선거나 의회주의적 방식, 점진적 교체의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오직 민중의 무장봉기를 통하여서만이 파쇼공화국의 타도는 가능하다.
- 이를 위해서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도시소자본가·중소자본가 등 모든 민중은 굳게 하나로 단결하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기구일 따름인 파쇼공화국을 무장봉기를 통하여 타도하고 즉각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임시혁명정부는 민중의 총의에 기초하여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헌법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다.
-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은 다음의 원리에 따라 구성될 것이다.
  - 민중의 실질적인 권력기관으로서 각 지역, 지방, 단위로 각급의 민중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민중위원회 대표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민중회의에 모든 권력이 귀속된다.
  - 파쇼공화국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군대와 경찰, 전경, 백골단, 제반의 특수부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축출하며, 혁명무력으로서의 혁명군과 민중개병제에 입각한 자위적 민족군대와 민중의 자정대를 창설한다.

0. 제국주의 자본과 예속독점 재벌소유자본의 몰수와 국유화를 통한 민중적 민족자립경제를 수립하여 경제의 발전을 이룬다.

- 제국주의자본과 독점재벌소유의 자본, 주요기간산업은 민중의 권력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에 귀속 국유화한다.

0. 연방제에 의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

- 우리의 혁명은 제국주의와 파쇼도당에 의해 저질러진 조국의 분단이라는 암흑한 조건하에서 남한의 민중이 남한에서의 혁명을 완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연방제에 의한 통일적인 민족국가 건설할 수 있다.
- 민중의 무장봉기에 의한 파쇼공화국의 타도와 임시혁명정부에 의해 건설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은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당장 다음의 정책을 실현한다.
  -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
  - 남북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간의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 민중차원의 남북한간 모든 교류를 보장한다
  - 연방제통일을 위한 제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연방제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조국통일을 달성한다.

0.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혁명적이고 자주독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할 것.

- 우리의 민중혁명은 민중해방운동과 혁명적 당, 정부, 국가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반제국주의, 반파쇼 민중해방투쟁의 일환이다.
- 우리의 혁명은 우리 민중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국제적인 지원이 우리 혁명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한다.
- 우리 민족 자신의 힘에 의한 우리의 혁명에 있어 북의 민중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형제적 지원과 연대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관건이다. 그와 함께 우리 민중 자신의 해방과 통일을 위한 제국주의와 파쇼도당에 대한 투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북의 민중의 보다 고도의 사회로의 발전과 건설의 과업에 무조건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의 민중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형제적 지원과 연대로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올바르게 결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강령해설)

0. 최대강령 문제

- 공산주의사회는 얼마나 위대하고 정의롭게 풍족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인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사라진 사회, 계급도 사라지고 국경도 사라지고 전쟁도 공포도 반목도 시기도 질시도 사라진 사회, 사람들의 자주성에 극도로 무한대로 고양되고 자율적인 규율과 높은 도덕성으로 충만한 사회, 고도의 물질문명의 고도의 자각된 존재인 인간과 조화롭게 합치된 사회, 도대체 왜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고 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상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
- 우리들 전위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며 따라서 공산주의자이다. 그런데 대중 앞에서 법정에서 유인물에서 우리가 빨갱이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대중의 의식수준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공명하게 가장 대대적으로 자신의 사상의 본질,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선전선동하여야 한다.
- 공산주의 사상의 본질은 피티와 피억압 민중의 해방의 사상이다. 특히 계급착취의 사회에서 자신의 몸뚱이 이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피티계급의 사상이다. 피티의 헤게모니는 여타의 계급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상적 능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했을 때만이 피티계급이 민주주의 혁명에 주저앉지 않고 더욱 전진,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 최대강령의 내용은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인데 이러한 혁명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당연히 자본주의다. 계급의식적 전위의 목표는 피티의 계급적 운동을 의식적으로 지도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쟁취하는 것이다는 점에 있다. 최소강령은 피티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피티와 비지간의 순수하고 전면적인 계급투쟁을 위해 그 이전에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 남한사회에서는 이미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전면화되어 있음에도 자본주의 발전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또한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경제정책에 깊숙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그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파행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자본주의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엄청나게 저해하고 있으며, 비지와 피티간의 순수한 계급분해와 전면적인 계급대립을 저해하고 있다.
- 이러한 모든 장애의 가장 집중한 표현이자 이러한 모든 장애의 가장 강력한 보루는 파쇼공화국이다. 파쇼공화국은 피티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데에 있어 가장 적대적이며 따라서 가장 선결적으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파쇼공화국의 타도와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의 수립을 가장 긴급한 당면의 정치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민족민주혁명이라고 이른다.
- 따라서 피티전위는 당면의 가장 긴급한 정치적 과제로 선정한 민족민주혁명의 과제를 진지하게 피티의 헤게모니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무조건 제기된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피티의 최소강령에 농축되어야 할 내용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피티계급에게 최대강령에 입각한 선전선동이 민주주의혁명의 과정에서도 한시도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확정·채택함으로써 폭력적 민중봉기에 의한 민족민주혁명(NDR)으로 사회주의 체제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하여 북한과 연합한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혁명의 불꽃"그룹을 결성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던 바,

1.

- 0. 1988. 3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민중의 당 중앙당사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마산교도소 복역중 알게 된 위 이종원과 자신이 그 당시 활동하던 민중의 당 백기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전술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동인으로부터,
  - 현 파쇼국가권력은 군대·경찰 등 광범한 관료기구를 동원하여 민중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나 민중의 혁명적 진출로 국가권력이 위태로워질 때는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파쇼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다.
  - 현 파쇼권력은 조직화된 폭력으로서 선거에 의해서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선거를 통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연립정부의 주장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 현재의 국회도 파쇼권력기구이므로 마찬가지로.
- 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이에 반론을 제기함이 없이 정세성격과 전술론에 대한 토론을 다시 벌이기로 합의하고,
- 0. 동년 6월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다방 등지에서 위 이종원으로부터 "혁명의 불꽃"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공받고 동인으로부터 현정세를 혁명적 정세로 보는 근거 내지 혁명적 정세의 분석틀로서,
  - 1986년 이후의 3저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가 대자본가와 권력층에 집중되어 민중의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었다.

- 개헌투쟁, 권인숙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파쇼권력에 대한 증오감이 6월 민중항쟁으로 돌아오른 이후 대통령선거투쟁 등 반독재투쟁열기가 공공연히 진행되어 왔다.
-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권력은 6.29선언이라는 개량주의적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 결국 이러한 세가지 정세분석의 틀로써 현정세를 분석하면 혁명적 정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민중의 국가권력 장악에 대한 노동계급의 분명한 태도표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임시혁명정부수립"이라는 슬로건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위 문건을 읽어본 후 다시 토론하기로 약속한 다음,

0. 동년 7월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상호불상다방에서 위 이종원과 만나 토론함에 있어 동인이,
- "혁명의 불꽃" 제1호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정세분석의 틀을 설명하고,
  - "혁명의 불꽃" 제2호를 중심으로 선봉그룹의 소수파가 조직적 분리를 선언한 것은 기회주의·개량주의에 대한 결별, 혁명주의를 주장한 것이며, 전국적 정치신문은 노동자당 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하며, "혁명의 불꽃"은 과거 선봉그룹이 벗어나지 못한 종파적 관점을 벗어났다는 설명을 하고,
  - "혁명의 불꽃" 제3호를 중심으로 올림핀은 그 본질이 노동계급의 착취에 불과하므로 혁명적 피티는 "반독 올림핀 결사반대", "임시혁명정부하의 남북공동올림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 현정세를 그와 같이 분석하는 정세분석의 틀에는 동의한다.
- 국가권력의 장악과 관련하여 계급독재를 위한 임시혁명정부라는 슬로건에 동의한다.

는 등 전체적으로 대체로 동의하자,

위 이종원은,

- 현 파쇼권력은 혁명적 방식인 무장봉기에 의해서만이 타도할 수 있다.
- 이 지긋지긋한 착취체계인 자본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계급의식을 불어넣어야 한다.

라는 등의 보충설명을 한 다음 향후 정세관과 전술에 관한 토론을 계속하되 현장활동을 위한 실무지식을 갖추도록 현장준비팀을 소개받으라는 제의와 함께 "혁명의 불꽃" 제4호, 제5호를 건네주어 피고인은 그 제의를 수락, 2종의 유인물을 교부받고,

0. 동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경희대학교 잔디밭 등지에서 위 이종원으로부터 소개받아 접선한 "혁명의 불꽃" 그룹 지도자인 가명 민호(본명 박옥탁)와 조지원 가명 동현(본명 김종구, 중앙대 철학과 '83학번) 및 가명 효정 등과 함께 위 민호, 효정 등으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와 혁명", "사회민주주의자의 두가지 전술", "혁명의 불꽃" 제5호 내지 제7호 등을 교재로 학습함에 있어,
-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을 위한 전위당 건설, 전국적 정치신문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학습하고,
  - "사회민주주의의 두가지 전술"에서는 노동계급은 경제주의, 경제투쟁 외에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혁명적 정세하에서는 무장에 의한 공격적 조직으로 맞출 것을 학습하고,
  - "국가와 혁명"에서는 국가의 본질과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 및 사회주의혁명의 필요성을 학습하고,
  - "혁명의 불꽃" 제5호에서는 위에서 실시한 바의 "혁명의 불꽃"그룹 강령에 관하여 학습하고,
  - "혁명의 불꽃" 제6호에서는 5공정권은 광주학살정권이며 혁명적 민중열기를 한데 모아 민중봉기로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정세관과 전술에 관하여 학습하고,

- 그시경 위 학습지도팀과 함께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위 가명 효정의 지시로 안양지역 공장규모·소재지 등 실태조사를 하고,

0. 1989. 1. 초순경 서울 신촌 부근 상호불상 카페 등지에서 위 이종원의 소개로 "혁명의 불꽃"그룹 지도자인 위 노성철을 접선, 동인과 함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혁명의 불꽃"그룹 기관지 "혁명의 불꽃" 제7호 내지 제9호를 교대로 학습·토론하면서 그 내용에 동의하자 동인으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동년 2월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동인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 약력소개

강기훈, '64. 3. 29생

보통 중간정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부친은 현직 교사. '82년도 단국대학교 입학, 학교에서는 주로 공개조직에서 활동(민주위, 삼민투)

- 구속·투옥 경력

'85년도 구속, '87년도 석방되어 계속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중의 당에서 활동하고 있음. 앞으로도 계속 공개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라는 요지의 "혁명의 불꽃"그룹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제출, "혁명의 불꽃"그룹 강령에 동의하고, 동인으로부터 전노운협 연대사업부 실무간사로 가입하여 활동할 임무를 부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2

1988. 6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이종원으로부터 "혁명의 불꽃" 창간호(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들자)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읽어본 바,

- 이제 우리는 다시 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간악한 미제와 파쇼도당과의 전투에서 철저히 과학적이고 유일하게 객관적 진리인 노동계급의 위대한 사상의 원칙을 옹호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민중의 거대한 힘을 이끌어내어 미제와 파쇼도당을 뒤집어엎을 수 있겠는가,

- 우리는 선봉과는 달리 현시기는 여전히 알(R, "혁명"을 지칭)정세이며, 현실의 정치상황의 핵심내용은 권력의 문제로서 임알정("임시혁명정부"를 지칭)의 전술적 슬로건을 높이 치켜들고 알(R, "혁명"을 지칭)로 진군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 시기에 민중의 알(R, "혁명"을 지칭)적 진출에 따라 알투쟁은 본령의 비합영역뿐 아니라 힘으로 전취해낸 공간에서 알적 이지프르("혁명적 선동선전"을 지칭)의 혁명에의 호소가 가능케 되고 이에 합당한 O, R, T(Org : 조직, "제반조직"을 지칭)를 합·비합 공간내에서 창출할 것을 피티의 전위에서 요구하게 된다.

라는 등 폭력적 "계급혁명에 의한 임시혁명정부수립으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선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1991. 5. 16. 13:00경 주거지에서 압수될 때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표기제2와 같이 "혁명의 불꽃"그

2) 공소장에 첨부된 별표기제의 자료요약은 1심 1회공판에서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총자료 집 II책 쪽 참조.

를 기관지 각호 및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 제작의 각 유인물을 소지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각 표현물을 소지하고,

3.

0. 1989. 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노성철에게 전민련 내부의 정당건설에 관한 동향을 보고함에 있어,

- 전민련 내부에 정당건설에 대한 장기표의 지론은 합법정당건설이고 김근태의 입장은 시기상조론이다, 라는 등 보고하고,

0. 동년 8월 말경 같은 곳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노성철로부터,

- "혁명의 불꽃" 그룹의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약칭:혁노맹)이 결성되었다.  
- 강령은 "혁명의 불꽃" 그룹의 강령과 동일하고 규약이 새로 제정되었다,

라는 등 혁노맹의 재건경위를 설명들은 다음 새로운 지도선을 소개받고,

0. 동년 9월 초순경 홍익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노성철이 소개한 혁노맹의 지도선 가명 김명훈을 접선, 동인과 정세관과 진술에 관하여 토론한 다음 같은 달 초·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동인과 재차 접선, 동인으로부터,

- 노성철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계속해서 우리와 활동하겠다니 우선 혁노맹 재건대회 의사록과 혁노맹 창건대회 선언문(초안), 그리고 보고서를 읽어보기 바란다,

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피고인을 김정훈, 동 지도선을 김명훈이라는 가명으로 지칭키로 하되 "다음 회합에 필요한 사전준비"로서,

- (1)전노운협의 체계구성,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보고내용, 그리고 정훈 동지가 이 전까지 해왔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
- (2)전민련의 정당으로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관점정리(보고서로 제출할 필요없음)
- (3)지난 번 회합에서 해결되지 못한 논점을 보다 구체화·풍부화된 형태로 정식화할 것(가급적이면 REPO로 올릴 것, 본인도 정식화해서 작성하겠음)
- (4)가능하다면 최근의 DJP 당직개편과 Pol적 의미에 대한 토론준비

등의 임무에 관한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 및 혁노맹 창건대회 의사록과 창건대회 선언문(초안)을 교부받아 동년 10월경까지 활동하는 등 혁노맹의 결성 이후 계속 동 조직의 중앙위원 등 상부지도선과 회합하며 연계활동을 하면서 그 창건대회 선언문을 읽어본 바

그 내용이,

- 우리들은 현재 노동계급과 민중의 계급투쟁에 대한 지도론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전위당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전위조직인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 창건을 엄숙히 선포한다. 그리고 이는 전국적 정치신문으로써의 (불꽃)의 창간 또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는 "혁명의 불꽃" 그룹으로서의, 나아가 『사회주의노동자동맹』으로서의 과거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

으로 회을 갖고, 진정으로 명실상부하게 계급투쟁에 대한 전위적 지도와 남한 노동자계급 혁명의 참모부가 될 전위당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전위조직으로서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이하 『혁노맹』으로 약칭)의 창건과 전국적 정치신문, "불꽃"의 발간에 하나의 단결된 대오로 굳게 뭉쳐서 고자 한다.

- 남한혁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현재 엄중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중의 대대적이고도 폭풍우와도 같이 특징지워지는 대중적 계급투쟁과, 그와 맞물려 반동파쇼도당의 노골적이고도 잔혹하고도 철저한, 대규모적인 탄압이 맞물려 일대결전이 예상되는 시기에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철저하고도 원칙에 입각한, 그리고 전위적 조직대오에 따른 계급투쟁에 대한 지도의 임무이다. 또한 우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계급의 전위당 건설의 임무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이 양자는 분리된 과정인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는가? 아니다! 전국적 정치신문과 직업적 혁명가의 전국적 전위조직! 이것이 모든 과제를 통일적으로 추구하는 유일한 무기이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혁노맹" "불꽃"의 대오에 시급히 합류하라!

- 동지 여러분! 압박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전국적 전위당의 건설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에 시급히 동참하라!

- "혁노맹" "불꽃" 만세!

-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 자본가계급 타도하고 노동계급 해방 쟁취하자!

- 군사파쇼 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립하자! 혁명만세!

["혁노맹" 창건대회]

등의 내용임을 인식하고서도 위와같이 압수될 때까지 소지·탐독한 것을 비롯, 별지(2) 기재)와 같이 혁노맹 기관지 "불꽃" 창간호 독립보충판 및 "들불" 그룹의 조직문건 "들불" 창간호를 위와같이 압수될 때까지 소지·탐독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다.

자료 B-3

강기훈씨 추가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8.21.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강기훈씨를 추가 기소한 검찰당국의 치졸한 저의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검찰이 강기훈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춰워 추가 기소한 것은 자신들이 조작해낸 소위 유서대필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가 불투명해지자 어떻게든 강기훈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유죄판결을 받게 하려는 치졸한 행위라 규정하며, 자신의 범죄적 조작행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로 본다.

우리는 지난 5월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국민적 항쟁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날조해낸 유서대필이라는 최대의 조작극에 맞서 강기훈동지와 함께 오로지 진실과 양심을 무기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소위 유서대필사건이 정권적 차원의 일대 조작극임을 밝히고, 조작 관련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함으로써 그들을 도덕과 양심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며, 양심 세력에게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다줄 것임을 자신있게 천명하는 바이다.

1991. 8. 22

전 국민족민주운동연합

자료 나-0-13 (공판기록 48~51)

대 법 원

감민제 591호 755-7307 1991. 8. 7.

수 신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제 목 민원서 송부

대법원장 앞으로 제출된 별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명의의 민원은 귀원에 계류중인(관련사건 91고합 1126)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송부합니다.

첨 부 민원서류 1부. 끝.

법 원 행정 처 감 사 관  
법원공무서 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 김 조 한 전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전화번호 475-3972

수신 대법원장

제 목 강기훈 씨 추가기소에 대한 민원서 송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재 김기철 씨의 분신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김기훈 씨에 대한 민원서 송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모든 재판과정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10-47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3호  
TEL:741-4550-1 FAX:766-2427

예장총 제75-392호 1991. 7. 30.

수 신 대법원장

제 목 김기철씨 분신사건의 강기훈씨에 대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재 김기철씨의 분신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강기훈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1. 강기훈씨는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 강태열 씨와 어머니 권태평씨를 비롯한 온 가정이 본 총회 산하 서울노회 무학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어릴 때 부터 교회학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본 총회의 교인입니다.

2. 본 총회와 온 교회는 강기훈씨에 대한 재판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지기를 주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작하시어 모든 재판과정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회 장 남 정 구  
인 권 위 원 장 이 정 열

(공판기록 52~55)

\* 영수증 공판기일 통지서(1991. 8. 28. 10:00) <생략>  
김철청, 김창국·이석태·박연철 각 변호사

자료 나-0-14 (공판기록 56)

대 표 변호인 지정서

사 건 91고합 1126(자살방조 등)

피고인 강 기 훈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표





변호인을 지정합니다.

1. 변호사 김 창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5 은촌빌딩 2층
2. 변호사 박 연 철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6-4 교대빌딩 3층
3. 변호사 이 석 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림빌딩 2층

1991. 8. 23.  
위 피고인 강 기 훈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서울구치소 교사 김 일 훈

서울형사지방법원 귀 중

(공판기록 57~59)

- \* 강철선-변호인 선임신고서, 공판기일통지서, 등사청구서(공소장) <생략>
- \* 박연철-등사청구서(공소장) <생략> (공판기록 60)

☐자료 나-0-16 (공판기록 62~66)

91형제 46779호

☐자료 나-0-15 (공판기록 61)

녹 취 허 가 신 청

사 건 91고합 1126, 1328 자살방조 등  
피고인 강 기 훈

위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문답의 전부들  
녹취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 8. 28.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 창 국  
박 연 철  
이 석 태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5부 재판장 좌 하

증 거 목 록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 상 규

1. 증거들

증제번호	물 건	수 량	압수목록 정 수	비 고
1-1 ~ 19	분신 당시 김기설 유류품	19점	87 - 88	
2-1	주민등록증 분신신고서	1점	93	
3-1	책 표 지	2매	175	
4-3	90년 민족민주운동의 평가와 91년 전망	1권	179	
5-1	업무일지	1권	217	
7-1	'조국은 하나' 수첩	1권	268	
7-2	메 모 지	2장	268	
8-1	서울지검 동부지청 85형제 43084호 기록	1권	276	
9-1 ~ 128	강기훈 집 압수품	128점	380	
10-1	이 력 서	1매	498	
11-1	'조국은 하나' 수첩	1권	504	
12-1 ~ 9	유인물 복사본 등	9점	335	
13-1 ~ 2	연말카드 편지	2점	526	

2. 증거서류

작성 자	정 수	증 거 명 칭	성 명	입증 취 지	비 고
검 사	710	피의자 신문조서	강 기 훈	공 소 사 실	
"	730	" (2회)	"	"	
"	760	" (3회)	"	"	
"	777	" (4회)	"	"	
"	846	" (5회)	"	"	
"	963	" (6회)	"	"	
"	983	" (7회)	"	"	
강 기 훈	647	자 술 서	"	"	
"	756	자 술 서	"	"	
"	930	자 술 서	"	"	
검 사	94	참고인 진술조서	양 경 속	"	
"	102	"	윤 여 덕	"	
"	113	"	정 삼 정	"	
"	166	"	장 병 호	"	
"	219	"	강 병 속	"	
"	230	"	이 재 구	"	
홍 성 은	246	진 술 서	홍 성 은	"	
검 사	248	진 술 조 서	홍 성 은	"	
홍 성 은	336	자 술 서	홍 성 은	"	
홍 성 은	403	자 술 서 (2회)	홍 성 은	"	
홍 성 은	422	자 술 서	홍 성 은	"	
검 사	425	진 술 조 서 (2회)	홍 성 은	"	
검 사	566	진 술 조 서 (3회)	홍 성 은	"	
이 영 미	404	진 술 서	이 영 미	"	
이 영 미	442	진 술 서	이 영 미	"	
검 사	454	진 술 조 서	이 영 미	"	
이 보 령	536	진 술 서	이 보 령	"	
이 보 령	600	진 술 서 (2회)	이 보 령	"	
이 보 령	621	진 술 서 (3회)	이 보 령	"	
민 수 진	604	자 술 서	민 수 진	"	
민 수 진	623	자 술 서 (2회)	민 수 진	"	
김 문 정	277	진 술 서	김 문 정	"	
이 지 해	325	자 술 서	이 지 해	"	
송 국 영	332	자 술 서	송 국 영	"	
최 규 성	494	진 술 서	최 규 성	"	
박 세 용	515	진 술 서	박 세 용	"	
최 수 미	615, 627	진 술 서	최 수 미	"	
이 정	708-1	진 술 서	이 정	"	
검 사	708-5	진 술 조 서	이 정	"	

자료 A-3 (동아, 8.22.)

작성자	정 수	증 거 명 칭	성 명	입증취지	비 고
이종원	740	자술서	이종원	공소사실	
이보은	804	자술서	이보은	"	
김사	817	진술조서	이보은	"	
김병희	820	진술서	김병희	"	
김사	837	진술조서	김병희	"	
김형민	855	진술서	김형민	"	
김형민	864	진술서 (2회)	김형민	"	
정운서	873	자술서	정운서	"	
임무영	955	진술조서	정운서	"	
최재인	983	자술서	최재인	"	
김사	999	진술조서	최재인	"	
전현철	1014	진술서	전현철	"	
김사	1018	진술조서	전현철	"	
윤석순	1037	진술서	윤석순	"	
김사	1043	진술조서	김점렬	"	
김사	1050	진술조서	김정렬	"	
김사	1060	진술조서	안혜정	"	
이장홍	499	범죄현장지문감정 의뢰회보		"	
임미애·심미옥	509	감정의뢰 회보		"	
이영애	513	감정의뢰 회보		"	
김종진	591	감정의뢰 회보		"	
김형영	352	필적감정 의뢰회보		"	
"	409	"		"	
"	536	필적 등 감정의뢰 회보		"	
"	585	"		"	
"	934	"		"	
김사	46	현장검증조서		"	
"	63	검시 조서		"	
"	191	실황 조서		"	
사법경찰관	9	진술 조서	정상정	"	
"	72	"	임근재	"	
"	579	범죄 경력 조회		모두 전과사실	
의사 김승호	39	사체 검안서		공소사실	

代筆協의 姜基勳氏  
28일 1차공판  
지난 5월 분신자살한 전  
민원사회부장 姜基勳氏의  
유서를 대필, 자살범姜氏의  
로고수기수판(민원사회부  
부장 姜基勳氏)의 대한  
1차공판의 유언을 오진  
10시 서울중앙지법(민원사  
에서 합의를) 재판장  
元旭부장판사(심리도 열  
다. 91.8.22.)

고등법원 28일 1차공판

대필협의 강기훈씨 28일 1차공판(동아, 91.8.22.) 51

대필협의 강기훈씨 28일 1차공판(동아, 91.8.22.) 51

대필협의 강기훈씨 28일 1차공판(동아, 91.8.22.) 51

자료 B-4

성명서

강기훈씨 1차공판에 즈음하여

기독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김기설씨 유서대필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해온 본회는 유서대필혐의로 기소된 강기훈씨의 1차 공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본회 김기설씨 분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의 자체 조사를 통하여 김기설씨의 유서는 자필임이 확실함으로 검찰의 강기훈씨를 유서대필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국가 공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우려하여 강기훈씨의 기소철회를 간곡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기훈씨를 사살방조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본회는 지난 7월 18일 일본 최고의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씨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김기설씨와 강기훈씨의 필체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 발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일본교회협의회 등 세계 기독교들이 진리와 양심을 수호하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유서대필 공방의 진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8월 21일 강기훈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또 한번의 잘못을 저질렀다. 이미 오래 전에 조작사건으로 드러난 혁노맹 사건으로 검찰이 강기훈씨를 추가기소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강기훈씨를 비롯한 재야단체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본회는 검찰의 추가기소는 어떻게든 강기훈씨를 유죄판결 받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의도하는 것을 밝혀둔다.

본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강기훈씨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본회는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을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기대한다.

1991. 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광제

자료 A-4 (동아, 8.27.)

第21574號 【第3種郵便物(7) 認可可】

## 遺書 필적 法廷공방 벌이다

### 姜基勳씨 내일 첫판

유서대필 혐의에 대한 양심해탈의 정황을 드러내며, 유서대필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해온 본회는 유서대필혐의로 기소된 강기훈씨의 1차 공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본회 김기설씨 분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의 자체 조사를 통하여 김기설씨의 유서는 자필임이 확실함으로 검찰의 강기훈씨를 유서대필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국가 공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우려하여 강기훈씨의 기소철회를 간곡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기훈씨를 사살방조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본회는 지난 7월 18일 일본 최고의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씨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김기설씨와 강기훈씨의 필체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 발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일본교회협의회 등 세계 기독교들이 진리와 양심을 수호하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유서대필 공방의 진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8월 21일 강기훈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또 한번의 잘못을 저질렀다. 이미 오래 전에 조작사건으로 드러난 혁노맹 사건으로 검찰이 강기훈씨를 추가기소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강기훈씨를 비롯한 재야단체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본회는 검찰의 추가기소는 어떻게든 강기훈씨를 유죄판결 받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의도하는 것을 밝혀둔다.

본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강기훈씨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본회는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을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기대한다.

1991. 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광제

〈본지 1574호〉

자료 나-1-1 (공판기록 67~127)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 조서	
제 1 회	
사 건	91 고평합 1126 자살방조 91 고평합 1328(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판사 정 일 성 판사 이 영 대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피 고 인	강 기 훈 (일명 : 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검 사	신상규, 안중택, 송명석 및 임 철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장기욱, 유현석, 강철선, 박재승, 조영환 및 박용일
기 일	1991. 8. 28. 10:00
장 소	제 417 호 법정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9. 11. 10:00
출 석	출 석
각 출 석	각 출 석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강 기 훈 (姜 基 勳)
생 년 월 일	: 공소장 기재와 같음.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
주 거	: "
본 적	: "

**재판장**  
이 사건에 당원 91고합 1328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을 병합한다는 진술.

**재판장**  
피고인에 대하여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요지 진술.4)

4) 총자료집 II책 27쪽 참조.

**재판장**  
피고인은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물음에 따라 대답하겠다고 진술.5)

지난 5.18부터 지금까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단순히 누명을 썼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하여 힘써 온 재야운동권과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식히고 행정권의 부도덕성을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이 사건에 숨어 있

5) 공판조서에 있는 모두진술과 강기훈 후원회에서 녹취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후원회 녹취내용은 총자료집 II책 75쪽 참조.

다는 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시 이틀씩 잠을 안 재우고 모욕적인 손찌검을 당하여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만 하루만에 진술을 시작한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은 엉터리이며 피고인은 절대 김기설의 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올바르게 규명하여 피고인과 그 밖에 피해받은 사람들 특히 고 김기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재판장**  
변호인의 녹취허가신청서(91. 8. 28자)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문답의 전부 녹취를 허가한다는 명.

**검사 신상규**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은 강기훈이라는 본명 이외에 일명 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등의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82년 2월 세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 단국대학교 문리대학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5. 8 학사경고 제적당하였나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대학시절 단국대학교의 '군부독재타도와 민주민주정부수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약칭:삼민투위)' 위원장으로 활약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84. 11.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류 10일을, 1985.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구류 10일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85. 11. 15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에 침입 농성, 방화한 소위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1986. 3. 28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87. 7. 8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88. 2부터 6월까지 민중의당 성동지부 선전담당으로 일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선거운동원으로 일했습니다.

문 : 또 4.26 총선 때에는 민중의당 남해, 하동지부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89. 5 전민련에 이현우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가입, 1990. 11월부터는 총무국의 부장직에 있는가요.  
답 : 가명을 사용하여 가입하지 않았으며 가입은 노협을 통해서 했고 노협은 가명을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문 : 89년 5월에 전민련에 가입한 거 맞죠.  
답 : 예.  
문 : 90년 11월부터 총무부 부장직 임무를 봤죠.  
답 : 91년 3월부터입니다.

문 : 전민련에서 강기훈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했나요, 아니면 이현우라는 이름을 사용했나요.  
답 : 이현우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문 : 피고인은 고 김기설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답 : 1990년 말 김기설이가 전민련에서 일하겠다고 찾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고 김기설을 1991년 1월초부터 전민련에서 출근하여 상근자로 일하였나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91. 1월 하순 피고인은 대학 후배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이영미와 가까운 친구인 홍성운을 김기설에게 소개하여 주었나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고 김기설이 죽기 전 그가 분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유서를 대신 써준 사실이 있지요.  
답 : 그런 일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91년 5월 7일 밤11시가 넘은 시각

에 피고인의 집에서 홍성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때 홍성은은 피고인에게 김기설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적어놓았다가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피고인에서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홍성은과 5월 5일 만나 늦게까지 술 먹은 것이 생각나 그날 미안한 것을 사과하려는 마음에 '그날 많이 취했지' 했는데 홍성은이 전화번호를 알려주긴 했으나 신경을 쓰지 않아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번역일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문 : 그 전에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한 적이 있나요.

답 : 처음이었습니다.

문 : 그때 그 전화번호를 받아줬나요.

답 : 쓰지 않았습니다.

문 : 홍성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피고인은 홍성은에게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91. 5. 7. 밤 홍성은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이미 김기설이 5. 8. 아침에 분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성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또 홍성은이가 김기설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연락을 부탁하였는데도 전화번호도 적어 놓지 않았고 홍성은으로부터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홍성은은 깊은 밤에 전화를 하여 다음날 분신할지도 모를 김기설에 관한 부탁을 하는데 피고인은 한가롭게 며칠 전의 술주정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는 말인가요.

답 : 5. 6. 0시 넘게까지 술을 마셨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말했을 것입니다.

문 : 홍성은은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여 이미 김기설의 분신계획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서 김기설이 죽은 5월 8일 오후 3시경 연세대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전날 왜 '미안하다' 고 하였는지 추궁하지 아니하였는가요.

답 : 예.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문 : 술 주정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홍성은이 왜 '미안하다' 고 하였는지 추궁할 필요가 없지 않았던가요.

답 : 그것은 홍성은의 판단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문 : 피고인은 1991. 5. 8. 서강대학교에서 분신사망한 김기설의 사망소식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5월 8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깨워서 또 분신했다 하여 깨어서 뉴스 들어서 알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91. 5. 8. 아침 0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이영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나 5월 8일 아침에 위와 같이 전화받았습니다.

문 : 그때 이영미가 피고인에게 김기설의 분신소식을 알려 주었나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이영미로부터 김기설의 분신소식을 전하여 듣고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91. 4. 27.부터 5. 8.까지 주로 피고인의 집에서 잤으며 서울을 떠나 지방에 다녀온 사실이 없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위 기간중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대필하여 준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5. 11. 전민련에서 검찰에 제출한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와 5. 20. 전민련에서 검찰에 제출한 "91. 전민련 수첩 '조국은 하나'"에 피고인의 글씨로 업무일지 내용과 수첩의 일정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없습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유서는 김기설의 글씨와 다르며 피고인의 글씨와 동일필적이고 수사과정에서 전민련이 김기설의 글씨라고 검찰에 제출한 업무일지, 전민련 수첩 등의 글씨 역시 피고인의 필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대필하고 업무일지, 전민련 수첩도 조작하여 놓고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답 :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91. 5. 10. 오후 3시경 종로 5가에 있는 봉주르카페에서 홍성은과 단들이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자리에서 홍성은에게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것에 대비하여 조사시 진술내용 등을 지도하여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하고 쓸데없는 사람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때 쓸데없는 사람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영미를 끌어들이지 말고 또 김기설의 수첩의 존재에 대하여 묵비하라는 뜻이었지요.

답 : '이영미를 빼도록 하자' 고 홍성은이가 말하였고 그 당시 저는 김기설의 수첩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문 : 홍성은이는 김기설이 죽은 다음날 즉 5월 9일에 연세대학교에서 피고인의 대학친구인 김진수로부터 똑같은 내용, 즉 이영미를 끌어들이지 말고 수첩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답 : 몰랐습니다.

문 : 피고인은 5월 10일 홍성은이를 만난 자리에서 홍성은이 가지고 있는 '91 전민련 수첩'의 뒷부분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넣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써 주지 않았습니다.

문 : 홍성은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홍성은에게 '좋은 추억만 갖고 있고 죽은 사람은 빨리 잊으라' 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죽은 사람은 빨리 잊으라는 식으로 묻지 않게 얘기하지 않았으며 위로의 말로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문 : 위와 같이 말한 피고인이 자신의 수첩에 죽은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써준 일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5월 10일 밤에도 종로 5가에 있는 도이치호프에서 이영미, 김진수와 함께 홍성은을 만나 같이 생맥주를 마신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자리에서도 역시 홍성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에 대비하여 의논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5월 12일 밤 김기설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위 도이치호프에서 이영미, 김진수, 홍성은과 같이 밤 12시경까지 술을 마신 일이 있는가요.

답 : 밤 12시가 좀 되기 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문 : 그때는 5월 8일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홍성은은 물론 그밖의 다른 누구도 검찰의 소환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검찰의 사체 인도 지휘에 따라 무사히 장례를 마친 후이었지요.

답 : 예.

문 :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친구 김진수는 자신이 박래전 분신사건과 단국대학생 최덕수 분신사건 등을 직, 간접으로 지원하여 무사히 장례를 마쳤는데 이번 김기설 사건에서 홍성은양을 내세운 것은 최대의 실수이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김진수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잊혀진 물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 그런 얘기는 한 일이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피고인은 1991년 5월 13일 저녁 신촌에 있는 주점에서 이영미, 김진수, 방수연, 이정 등과 같이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자리에서 홍성은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사후 대책을 의논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홍성은이 조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사후대책을 의논하진 않았습니니다.

문 : 그 자리에서는 이영미가 검찰에 출두할 경우, 김기철과 홍성은을 소개하여 줄 때 함께 관여한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홍성은을 직접 김기철에게 소개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의논이 되었는가요.

답 : 그런 사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홍성은이 두번째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5월 17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홍성은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홍성은의 집에 찾아가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에 따라 5월 17일 피고인의 어머니가 홍성은의 집에 가서 홍성은의 어머니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

답 :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5월 17일 피고인의 어머니가 홍성은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같이 간 피고인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답 : 어머니가 피고인의 친구와 같이 갔었는지를 모르겠고 따라서 그 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 : 피고인의 어머니는 홍성은의 어머니에게 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느냐며 홍양이 잘하지 못하면 자기 아들이 곤란해진다며 변호사 선임을 독촉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는가요.

답 : 예.

문 : 같은 날인 5월 17일 피고인의 대학후배이자 홍성은의 대학선배인 방수연이 홍성은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홍성은의 어머니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 대학선배 중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말하였다는데 이것도 피고인이 시킨 일이 아닌가요.

답 : 시킨 일이 아닙니다.

문 : 위와 같은 일련의 대책회의는 홍성은, 이영미 등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서대필 혐의가 들어날

까봐, 말하자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런 의도는 없었으며 다만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은 91년 4월과 5월 초순에는 내내 집에 들어가서 잤나요.

답 : 가끔 외박하긴 했어도 대체로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문 : 홍성은이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5월 13일부터 5월 14일, 15일까지는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민련 사무실에서 잤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또 검찰이 김기철이 수첩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전민련측에 그 제출을 요구한 5월 16일과 5월 17.에는 김기철의 수첩이 보관되어 있던 연세대의 학생회관에 있는 강경대 대책위 사무실에서 잤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5월 18일부터 명동성당에 들어가 머무르고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지요.

답 : 예.

문 : 위와 같이 5월 13일-18일에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5월 13일-15일에는 업무가 바빠지고 주위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황폐해져서 사무실에서 잤고, 5월 16일에는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집이 압수 수색당했다는 말을 듣고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집에 못 들어갔으며, 5월 18일 언론보도 후에는 대책위원들과 명동성당에 들어가 지냈습니다.

문 : 김기철이 죽은 5월 8일부터 5월 12일에는 집에 잘 들어가다가 그 후인 5월 13일-15일부터 안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5월 8일-12일에는 12시든 1시든 집에 들어갔으나 5월 13일부터 15일에는 사무실에 숙직할 사람도 없고 술을 마시다가 보니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검찰이 전민련에 대하여 김기철의 필적제출을 요구한 직후인 1991. 5. 10. 낮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의 고 김기철이 사용하던 책상서

랍에서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를 찾아내어 들여다 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피고인이 찾아낸 것은 아니지만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업무일지를 본 일이 있습니다.

문 :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5. 11. 점심 무렵 위 업무일지를 정운서에게 건네주었나요.

답 :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위 업무일지를 찾아낸 5월 10일 점심 때부터 위 업무일지가 정운서에게 넘겨진 5월 11일 낮까지 사이에 위 업무일지를 보관하는 동안에 본래의 기재내용 중 일부를 뜯어내고 피고인의 글씨로 다시 베껴놓지 아니하였는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1991. 6. 24부터 7. 5일까지 10일 동안은 위 업무일지를 본 사실조차도 없다고 부인하였었지요.

답 : 예.

문 : 그러나 7월 5일 전민련의 부장인 김형민, 정운서가 검거되어 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5월 10일에 사회국 업무일지를 전민련 사무실에서 찾아보았고 다음날 정운서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추궁당하자 처음에도 또다시 완강히 부인하다가 하는 수 없어서 5월 10일에 업무일지를 찾아본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국 업무일지를 피고인의 글씨로 다시 써서 유서가 김기철의 글씨인 양 조작하여 놓고서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예 위 업무일지를 본 적도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 피고인은 1991. 5. 20. 김기철이 사용하던 수첩이라며 전민련이 검찰에 제출한 수첩을 언제 어디서 본 적이 있는가요.

답 : 전날(5월 19일) 밤에 명동성당에서 보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홍성은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 5월 13일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다가 피고인의 집이 압수 수색을 당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연세대 학생

회관에 있는 강경대 대책위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5월 16일과 5월 17일, 5월 18일 사이에 위 사무실에 있던 김기철의 수첩을 꺼내어 그것과 똑같은 다른 전민련 수첩에 피고인의 글씨로 김기철의 수첩에 적혀 있는 일정, 전화번호 등을 다시 기재하여 놓은 사실이 있지요.

답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첩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문 : 피고인은 5월 8일 김기철이 죽은 후 한번도 연세대에 들어가 잠을 잔 사실이 없나요.

답 : 예.

문 : 그러다가 검찰이 김기철이 남긴 수첩의 존재를 알고 전민련에 그 제출을 요구한 5월 16일부터 연세대에 들어가 18일까지 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5월 20일에 검찰이 김기철 수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전민련 수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90년까지는 전민련 수첩을 사용하다가 91년에 전민련 수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연초에 91년 수첩을 배부받았으나 수첩이 크고 불필요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놓아 두었으나 없어졌습니다.

문 : 91년 수첩과 90년 수첩의 크기가 많이 차이나요.

답 : 91년 수첩이 훨씬 큼니다.

문 : 5월 20일 명동성당에서 전민련 상집위원장인 최규성이 '수첩 있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없다'고 대답한 일이 있나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유서대필 사실, 수첩, 업무일지 조작 사실 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던 중 검사가 조작된 수첩, 업무일지를 제시하고 수첩 본체의 잔류부분과 새로 끼여진 부분의 요철이 불일치하는 등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피고인도 유서가 대필되었고 유서대필을 숨기기 위하여 수첩과 업무일지가 조작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

답 : "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김기철씨의 필체가 두 가지였다"는 사실

이다. 수사받을 당시 수첩이 조작된 것이고 필적감정이 정확하다면 유서도 대필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91. 5. 27. 명동성당에서 김기설 명의의 유서내용을 그대로 다시 써 보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날 피고인이 쓴 유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평소 습관(85년 민정당 연수원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의 피고인 작성의 3가지 자술서, 항소이유서 그리고 압수된 피고인 노트 등)으로 'ㅂ'을 두획으로 'ㄹ'을 한획으로 썼었는데도 위 유서에는 'ㅂ'을 4획으로 'ㄹ'을 3획으로 써놓았는데 피고인의 필체를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쓴 글씨가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고 위 두가지 필체를 다 사용합니다.

문 : 피고인 여자친구 이영미와 대학후배 김진수가 5월 8일 김기설이 사망한 이후 장례를 치를 때까지 계속하여 홍성은의 주변에서 같이 행동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사귀던 남자친구가 사망하여 옆에서 돌보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김진수와 홍성은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답 : 정확히 모르나 같은 학교 나와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김진수는 김기설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홍성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하여 홍성은을 보호한다며 함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 홍성은이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5월 13일부터 김진수는 계속하여 5. 13, 14, 15에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16, 17.은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그리고 5. 18 이후에는 명동성당에서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자며 행동을 함께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김진수와 친밀한 사이며 다감한 성격의 소유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문 : 5월 18일 이전에는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함께 한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요

답 :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뿐이라며 전혀 행적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해놓았는데 위 5월 1일 2일 3일 사이에 김기설과 만나 분신문제를 의논하고 또 유서를 써준 사실이 있지 아니한가요

답 : 위 일시에 만난 적도 없고 유서를 써준 일도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김기설이 방송통신대학생 이지혜 등에게 분신하겠다고 발설한 1991년 5월 5일 밤 홍성은, 이영미, 김진수 등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자리에서 홍성은에게 김기설의 안부를 묻고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보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고인이 91. 5. 10. 오후 봉주르 카페에서 홍성은과 만났을 때에는 5월 8일에 사망한 김기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며 죽기 일주일 전부터 김기설과 감정이 나빠졌다고 말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김기설이 학력을 속인 일이 있어 배신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한 일은 있으나 죽기 일주일 전부터 김기설과 감정이 나빠졌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문 : 위와 같은 말을 5월 5일 피고인이 홍성은에게 김기설과 잘 사귀어 보라고 한 말과는 모순되지 아니한가요

답 : 5월 5일에 한 말은 의례적인 얘기이며 5월 10일에서 한 얘기와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나온 말이므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6월 24일 1회 진술서(647-673),<sup>6)</sup> 6월 28일 2회 진술서(756-758),<sup>7)</sup> 7월 5일 3회 진술서(930-933)<sup>8)</sup>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인가요

답 : 예.

6) 총자료집 I책 433쪽에서 438쪽 참조.

7) 총자료집 I책 472쪽에서 474쪽 참조.

8) 총자료집 I책 519쪽에서 520쪽 참조.

문 : 검찰에서

6월 25일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710-729)<sup>9)</sup>

6월 26일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730-736)<sup>10)</sup>

6월 29일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760-776)<sup>11)</sup>

7월 1일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777-782)<sup>12)</sup>

7월 3일 제5회 피의자 신문조서(846-854)<sup>13)</sup>

7월 9일 제6회 피의자 신문조서(963-980)<sup>14)</sup>

7월 11일 제7회 피의자 신문조서(983-992)<sup>15)</sup>

각 작성하였는데 모두 피고인이 사실대로 임의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읽어 본 후 서명날인한 것인가요

답 : 예.

검사 안증택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은 상수, 상우, 이현우, 김정훈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왔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그러한 가명을 사용했는 것은 어떤 조직활동의 조직보안을 위해서 인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검찰진술에서 상수라는 가명은 88년 7월 혁명의 불꽃 중앙위원 이종원의 소개로 기관지 학습을 있던 조직원 가명 민호(본명 박옥탁)가 지어주어 사용한 가명이며, 상우라는 가명은 89년 1-2월경 이종원의 소개로 동 조직 중앙위원 노성철과 학습 등 활동할 때 지어주어 사용한 가명이며, 김정훈이라는 가명은 89년 9월경 조성철의 소개로 "혁명적 노동자 계급 투쟁동맹"(혁노맹) 조직활동을 하던 가명 김정훈이 혁노맹 창건대회 의사록과 결성선언문(초안) 및 편지메모를 건네줄 때 지어준 가명이며, 이현우라는 가명은 89년 4월 전노운협(연대사업 실무간사) 89년 5월 전민련(민생대책위 실무간사 등) 가입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검찰진술에서 혁명의 불꽃 및 혁노맹과 관련하여 88년 3월 이종원 회합, 88년 6-7월 이종원과 "혁명의 불꽃" 제1-3호 학습, 제4-5호를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검찰진술에서 혁명의 불꽃 및 혁노맹과 관련하여 88년 3월 이종원 회합, 88년 6-7월 이종원과 "혁명의 불꽃" 제1-3호 학습, 제4-5호를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 예.

9) 총자료집 I책 454쪽에서 460쪽 참조.

답 : 위 책자를 교부받아 토론한 일은 있으나 학습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 88년 7-9월 이종원이 소개한 가명 민호, 가명 동현(본명 김종구), 가명 효정 등과 레닌 원전, "혁명의 불꽃" 제5-7호 등으로 토론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 89년 1월 초순 이종원 소개로 동 조직 중앙위원 노성철 회합, 동 기관지 제7-9호로 토론한 후 89년 2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 그리고 공개조직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해서 89년 4월 전노운협에 들어가 활동한 사실이 있나요

답 : 공개조직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을 먹었고 그것과 혁명의 불꽃 쪽 사람들과의 만남은 전혀 관계 없는 일입니다.

문 : 89년 9월경 노성철의 소개로 위 김명훈과 회합, 정세관 등 토론하고 동인으로부터 결성선언문(초안), 재건대회 의사록 사본 및 편지하는 등 활동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위와 같이 받았을 뿐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혁명의 불꽃"그룹 중앙위원이던 이종원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 86년도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중 알게 되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동인을 1988년 3월 동인이 출소했을 때 피고인이 연락하여 만났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그 당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답 : 88년 총선에 대비해 민중의 당 남해지구당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88년 3월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민중의 당 중앙당사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동인을 만나 민중의 당 백기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10) 총자료집 I책 462쪽에서 463쪽 참조.

11) 총자료집 I책 484쪽에서 487쪽 참조.

12) 총자료집 I책 500쪽에서 503쪽 참조.

13) 총자료집 I책 500쪽에서 503쪽 참조.

14) 총자료집 I책 545쪽에서 550쪽 참조.

15) 총자료집 I책 556쪽에서 559쪽 참조.

선거전술에 관한 토론을 한 바 있지요.

답 : 그런 얘기를 폭넓게 얘기하진 않았으나 선거 운동 얘기를 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은 그 당시 동인으로부터 "현파소국가권력은 군대·경찰 등 광범한 관료기구를 동원하여 민중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나 민중의 혁명적 진출로 국가권력이 위태로워질 때는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파쇼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다. 현파소권력은 조직화된 폭력으로서 선거에 의해서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선거를 통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연립정부의 주장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국회도 파쇼권력기구이므로 마찬가지로이다"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이에 반론을 제기함이 없이 정세성격과 진술론에 대한 토론을 다시 벌이기로 합의하였지요.

답 :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다시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은 그 후 동년 6월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다방 등지에서 동인과 만나 동인으로부터 "혁명의 불꽃"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공받고 동인으로부터 정세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지요.

답 : 예.

문 : 그 당시 동인은 현정세를 혁명적 정세로 보는 근거 내지 혁명적 정세의 분석틀로서 "1986년 이후의 3저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가 대자본가와 권력층에 집중되어 민중의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었다. 개헌투쟁, 권인숙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민중의 파쇼권력에 대한 증오감이 6월 민중항쟁으로 달아오른 이후 대통령선거 투쟁 등 반독재투쟁 열기가 공공연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권력은 6.29선언이라는 개량주의적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세가지 정세분석의 틀로써 현정세를 분석하면 혁명적 정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는 민중의 국가권력 장악에 대한 노동계급의 분명한 태도표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임시혁명정부 수립'이라는 슬로건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위 문건을 읽어본 후 다시 토론키로 한 바 있지요.

답 : 설명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혁명정세의

분석틀에 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은 그 후 동년 7월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동인을 만나 동인은, '혁명의 불꽃' 제1호를 교재로 앞에서 신문한 바와 같은 취지의 정세분석의 틀에 관하여 설명하고 " '혁명의 불꽃' 제2호를 중심으로 선봉그룹의 소수파가 조직적 분리를 선언한 것은 기회주의 개량주의에 대한 결별, 혁명주의를 주장한 것이며, 전국적 정치신문은 노동자당 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하며, '혁명의 불꽃'은 과거 선봉그룹이 벗어나지 못한 종파적 관점을 벗어났다는 설명을 하고 '혁명의 불꽃' 제3호를 중심으로 올림핌은 그 본질이 노동계급의 착취에 불과하므로 혁명적 피타는 '반동올림핌 결사반대' '임시혁명정부하의 남북공동올림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 당시 피고인은 동인의 설명 중 정세분석의 틀과 국가권력 장악과 관련하여 계급독재를 위한 임시혁명정부라는 슬로건 등 전체적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지요.

답 : 동의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

문 : 동의했다는 것은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요.

답 :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 : 그러자 위 이종원은 피고인에게 "현파소권력은 혁명적 방식인 무장봉기에 의해서만이 타도할 수 있다. 이 지긋지긋한 착취체계인 자본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계급의식을 불어넣어야 한다"라는 등의 보충설명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그 다음 향후 정세관과 전술에 관한 토론을 계속하되 현장활동을 위한 실무지식을 갖추도록 현장 준비팀을 소개받으라고 제의하면서 "혁명의 불꽃" 제4호, 제5호를 건네주어 피고인은 동인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유인물을 수령하였지요.

답 : 현장준비팀 얘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못했다고 하자 공부를 계속키로 하였으며, 위 유인물은 언제 받았는지 모르나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 : 피고인이 이종원으로부터 소개받기로 한 사람은 가명 민호라는 폭우탁이었지요.

답 : 예.

문 : 그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선하게 되었나요.

답 : 그해 7월경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이 조금 먼저 가서 신문을 올려놓고 있자 그 사람이 와서 "기쁜씨 맞습니까" 하여 "예" 하자 "전 민호입니다" 하여 만났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88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경희대학교 잔디밭 등지에서 위 가명 민호, 가명 동현, 가명 효정 등과 만나서 레닌원전 및 "혁명의 불꽃" 제5호 내지 제7호 등으로 학습하였지요.

답 : 레닌원전을 공부한 적은 있으나 혁명의 불꽃 제5호 내지 제7호 등을 학습하진 않고 그냥 읽어보라고 나누어주는 식이었습니다.

문 : 그 당시 학습방법과 내용은 가명 민호와 가명 효정이 발제, 발표하고 피고인 등은 의견제시·질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고, 레닌원전을 학습하면서 중간중간에 "혁명의 불꽃" 제5호 내지 제7호를 연관시켜 학습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 당시 원전으로 학습한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을 위한 전위당 건설, 전국적 정치신문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학습하고 "사회민주주의의 두가지 전술"에서는 노동계급은 경제주의, 경제투쟁 외에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혁명적 정세하에서는 무장에 의한 공격적 조직으로 맞출 것을 학습하고, "국가와 혁명"에서는 국가의 본질과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 및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학습하였지요.

답 : 한 책을 그런 식으로 잘라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잘라서 그것을 학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 그 당시 "혁명의 불꽃"으로 학습한 내용은 동기관지 제5호 학습에서는 "혁명의 불꽃"그룹의 강령을 학습하고, 동 기관지 제6호 학습에서는 5공정권은 광주학살정권이며 혁명적 민중열기를 한데 모두어 민중봉기를 일으켜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지의 정세관과 전술에 관한 내용 등이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그러한 학습을 하면서 그 현장실습 지도팀과 함께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조사활동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말하는 현장실습활동을 한다는 것은 예컨대 위장취업자가 공장에 취업하여 현장실습을 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나 방법으로 지역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그러한 현장실습 내지 지역활동을 목적으로 가명 효정의 지시로 현장실습 준비팀과 함께 안양지역 공장을 중심으로 공장의 소재지와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목적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장에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들어가서 지역기반을 확보하여 그곳에서 조직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답 : 예. 그런 의미입니다. 현장조사는 단 1회하였을 뿐입니다.

문 : 피고인은 그 후 실제 현장실습 활동, 지역활동을 하였지요.

답 : 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인이 가명 민호, 가명 효정 등의 주도하에 현장준비학습을 할 때 "혁명의 불꽃" 제5호를 교재로 학습한 "혁명의 불꽃" 조직강령의 내용은 민족민주혁명(NDR)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 성격규정하고 노동자중심의 민중이 민중봉기로 미제국주의, 파쇼권력 및 독점자본을 타도,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여 혁명적 사회변혁을 일으켜 민주주체의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 방식으로 남북통일을 하고 궁극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었지요.

답 : 예.

문 : 그 구체적 내용 요지는 최소강령으로서 -파쇼공화국의 타도와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의 건설 -제국주의 자본과 예속독점 재벌소유자본의 몰수 및 국유화를 통한 민중적 민족자립경제의 수립, 발전



-연방제에 의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혁명적이고 자주독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외교정책의 실현 등이었고, 강령해설로서 최대강령 문제를 제기하여 궁극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이었지요

답 : 그 내용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 : 위 최소강령 위 내용은 공소장 제6장 끝 5행부터 제11장 제3행16)까지와 같은가요  
답 : 대체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문 : 최대강령의 내용이 공소장 제11장 제6행부터 제14장 끝 5행17)까지와 같은가요  
답 : 읽어 본 일이 없어 그 내용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 피고인은 앞에서 "혁명의 불꽃" 제5호를 이종원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읽어보았으며, 가명 민호 등과 학습을 하였다고 진술했으며 그 유인물에는 최소강령과 최대강령 문제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최대강령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답 : 최대강령은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가명 민호, 가명 효정 등이 지도했던 현장준비팀 학습을 마친 후 어떤 활동을 하였던가요  
답 :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그 후 몇개월 동안 상부지도선 연락방법이 잘못되어 연말까지 "혁명의 불꽃"그룹 구성원들과 활동하지 못하고 공백기간이 있었지요  
답 : 연락방법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함께 일하기 싫어서 안했습니다.

문 : 그러던 중 1989년 1월 초순경 가명 동현(본명 김경수)이라는 사람의 연락으로 가명 민호(본명 허욱탁)를 만나서 조직관련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사람의 권유로 다시 이종원을 만나고 그 사람의 제의로 다시 노성철을 만나게 되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89년 1월 초순경 서울 신촌부근 상호불상 카페 등지에서 노성철을 만나 "혁명의 불꽃"그룹 기관지 제7호 내지 제9호를 교재로 학습하고 동인이 피고인에게 자기소개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한

16) 총자료집 II책 39쪽에서 40쪽 참조.

바 있지요.  
답 : 위 유인물로 학습한 적은 없으며 시사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그것을 토론하였으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 그러한 학습을 하던 중 1989년 2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노성철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요지는

-약력소개  
강기훈, 64년 3월 29일생.  
보통 중간 정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부친은 현직교사. 82년도 단국대학교 입학, 학교에서는 주로 공개조직에서 활동(민추위, 삼민투).  
-구속, 투옥 경력  
85년도 구속, 87년도 석방되어 계속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중의 당에서 활동하고 있음. 앞으로도 계속 공개조직 활동하고 싶음이라는 등의 내용이지요.

답 : 예.  
문 : 그 소개서는 피고인이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요  
답 : 노성철에게 주어 혁명의 불꽃 관계자에게 제출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 : 피고인이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동안 그 조직의 조직원들과 기관지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현장조사활동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직 활동을 해오던 중 노성철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여 제출한 것일 뿐, 사실상은 그전부터 조직원들과 실제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 그 소개서를 제출함으로써 형식적인 가입절차를 갖추어 보완한 것이지요  
답 : 조직원들과 접촉은 있었으나,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

문 : 피고인은 그 당시 노성철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싶으냐고 하여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겠다고 한 후 연대사업담당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지요  
답 : 노운협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하고 있던 차에

17) 총자료집 II책 40쪽에서 41쪽 참조.

노성철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냐"고 물어 피고인이 "노운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문 : 노운협에 들어간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3월 말이나 4월 초에 사무국장인 최한배의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문 : 피고인은 "혁명의 불꽃"이 언제, 어떤 경위로 결성되었는지 아는가요  
답 : 공소장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문 : 이종원, 노성철 등의 진술에 의하면 "혁명의 불꽃"은 공소장 제4장 9행부터 제6장 제8행18)까지와 같이 하여 앞에서 신문한 강령을 확정하고 조직한 것이라는 데 어떤가요  
답 : 혁명의 불꽃이 결성된 사실은 알았으나 그 결성경위는 치안본부에서 알려주어 비로소 알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88년 6월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이종원으로부터 "혁명의 불꽃" 제1호 내지 제3호를 교부받아 읽어본 것을 비롯하여 가명 민호, 노성철 등으로부터 1989년 1월경까지 공소장 공소사실 별지(1)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받아 읽고 보관하다가 1991년 5월 16일 압수되었지요  
이때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별지(1)19)을 제시.  
답 : 예.

문 : "혁명의 불꽃" 창간호(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자)의 내용은 공소장 공소사실 제22면 상단 4제 줄부터 제23면 2제줄20)까지와 같은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혁명의 불꽃"그룹 관련 나머지 유인물은 공소사실 별지(1) 기재와 같은데 어떤가요  
이때 별지(1)을 재차 피고인에게 제시.  
답 : 예.

문 : 피고인은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약칭 민학투련)을 알고 있지요  
답 : 이름은 들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검찰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 단체는 "혁명의 불꽃"그룹에서 학생운동권에 침투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각종 폭력시위를 자행

하여 왔는데 어떤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피고인이 그러한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고인도 그러한 학생단체를 배후 조종하고 활동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동년 4월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노성철에게 전노운협의 내부 조직체계와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지요  
답 :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내용을 설명했으나,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문 : 피고인은 다시 동년 5월경 전민련에 가입, 민생대책위 간사 등으로 활동하였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89년 6월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노성철에게 전민련 내부의 정당건설에 관한 동향을 말하면서 전민련 내부에서는 장기표의 합법정당 건설론과 김근태의 시기상조론이 대립하고 있다는 등으로 보고하였지요  
답 : 그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은 동년 7월 20일경 "혁명의 불꽃"그룹이 혁노맹으로 조직재건을 위하여 가지기로 하였다가, 조직보안이 누설된 것 같다고 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던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 : 성내역 근처 아파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그후 혁노맹은 1989년 8월 14일 창립되었지요  
답 :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 당시 참석하였나요  
답 : 참석 못했습니다.  
문 :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참석하기 싫어서 안했습니다.  
문 : 피고인은 동년 8월 말경 신촌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노성철을 다시 만났지요  
답 : 예.  
19) 총자료집 II책 72쪽 참조.  
20) 총자료집 II책 43쪽 참조.

문 : 피고인은 그 후 몇개월 동안 상부지도선 연락방법이 잘못되어 연말까지 "혁명의 불꽃"그룹 구성원들과 활동하지 못하고 공백기간이 있었지요  
답 : 연락방법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함께 일하기 싫어서 안했습니다.

문 : 그러던 중 1989년 1월 초순경 가명 동현(본명 김경수)이라는 사람의 연락으로 가명 민호(본명 허욱탁)를 만나서 조직관련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사람의 권유로 다시 이종원을 만나고 그 사람의 제의로 다시 노성철을 만나게 되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89년 1월 초순경 서울 신촌부근 상호불상 카페 등지에서 노성철을 만나 "혁명의 불꽃"그룹 기관지 제7호 내지 제9호를 교재로 학습하고 동인이 피고인에게 자기소개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한

바 있지요.  
답 : 위 유인물로 학습한 적은 없으며 시사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그것을 토론하였으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 그러한 학습을 하던 중 1989년 2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노성철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요지는

-약력소개  
강기훈, 64년 3월 29일생.  
보통 중간 정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부친은 현직교사. 82년도 단국대학교 입학, 학교에서는 주로 공개조직에서 활동(민추위, 삼민투).  
-구속, 투옥 경력  
85년도 구속, 87년도 석방되어 계속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중의 당에서 활동하고 있음. 앞으로도 계속 공개조직 활동하고 싶음이라는 등의 내용이지요.

답 : 예.  
문 : 그 소개서는 피고인이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요  
답 : 노성철에게 주어 혁명의 불꽃 관계자에게 제출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 : 피고인이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동안 그 조직의 조직원들과 기관지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현장조사활동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직 활동을 해오던 중 노성철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여 제출한 것일 뿐, 사실상은 그전부터 조직원들과 실제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 그 소개서를 제출함으로써 형식적인 가입절차를 갖추어 보완한 것이지요  
답 : 조직원들과 접촉은 있었으나,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

문 : 피고인은 그 당시 노성철로부터 “혁명의 불꽃” 그룹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혁노맹)이 결성되었다. 강령은 ‘혁명의 불꽃’ 그룹의 강령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하고 규약만 새로 제정하였다”라는 등 혁노맹의 재건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새로운 지도선을 소개받았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소개받은 지도선은 가명이 김명훈이라는 사람인가요

답 : 예.

문 : 그 지도선은 가명 김명훈이고, 1989년 9월 초 순경 신춘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노성철이 지시한 대로 피고인이 상우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테이블 위에 신문을 펴놓고 있는데 20대 후반 정도의 청년이 와서 상우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노성철이 말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동석하게 되어 접선하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그 지도선은 그 당시 자신의 가명이 김명훈이라고 하면서 노성철이 소개한 혁노맹의 지도선이라고 하고, 피고인을 김정훈이라고 가명을 지어주었지요

답 : 처음에는 상우라고 했고 두번째 만났을 때 김정훈이라는 가명을 메모해주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신문시에 위와 같은 물음과 내용으로 진술했는데 어떤가요

답 :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그 당시 동인과 정세관과 전술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그 후 9월초-중순경 가명 김명훈을 다시 만났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그 당시 동인으로부터 “노성철로부터 이야기 들었다 계속해서 우리와 활동하겠다니 우선 혁노맹 재건대회 의사록과 혁노맹 창건대회 선언문(초안) 그리고 보고서를 읽어보기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편지메모가 든 서류봉투를 받았지요

답 : 첫번째 만남에서 정세토론하다가 김명훈과 심각한 의견차이가 나 김명훈이 “그 문제에 관해 우리

대회에서도 얘기된 바 있다” 하여 피고인이 “그러면 정리된 문헌을 갖다 달라” 하여 두번째 만남에서 위 서류봉투를 받은 것입니다.

문 : 검찰에서는 위 물음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적이 있나요

답 : 예.

문 : 그 편지메모에는

-“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으로 되어 있고  
-혁노맹 결성에 관한 문건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읽어보기 바라며 기관지 “불꽃” 창간호 독립보충판에 잘 정리되어 나갈 예정이라면서  
-다음 회합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을 기재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 메모의 “다음 회합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1)전노운협의 체계구성,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보고내용, 그리고 정훈 동지가 이전까지 해왔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

(2)전민련의 정당으로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관점 정리(보고서로 제출할 필요 없음).

(3)지난번 회합에서 해결되지 못한 논점을 보다 구체화, 풍부화된 형태로 정식화할 것(가급적이면 Repo로 올릴 것, 본인도 정식화해서 작성하겠음).

(4)가능하다면 최근의 DJP 당적개편과 Pol적 의미에 대한 토론준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 예.

문 : 위 DJP와 Pol은 무슨 뜻인가요

답 : DJP는 민주정의당이라는 의미이고 Pol은 정치적이라는 뜻입니다.

문 : 피고인은 결국 1989년 9월 가명 김명훈을 통하여 혁노맹에 가입하였지요

답 :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89년 7월 20일 혁노맹 재건창립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재건창립대회인 줄은 모르고 참석했습니다.

문 : 동년 8월 말경 노성철을 통하여 혁노맹 재건창립경과를 전문함과 동시에 상부지도선 가명 김명훈

을 소개받고 동년 9월 초순 접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상부 지도선인 줄은 모르고 김명훈을 만났습니다.

문 : 9월초 김명훈을 만나 “상우냐” “그렇다” “내가 새로운 지도책인 김명훈이다”라고 했다는 진술을 하였나요

답 : 그런 진술을 한 일이 없습니다.

문 : 동년 9월초-중순 2차 접선시 가명 김명훈이 노성철로부터 들었다면서 “우리과 같이 계속 활동하겠다니 우선 창립대회 의사록과 결성선언문(초안)을 읽어보라”며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정세에 관한 문건을 갖다 달라고 하여 위 문건을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문 : 그 당시 가명 김명훈이 피고인에게 다음에 만날 때 준비해 올 사항으로서 앞서 신문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임무를 부여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 위와 같은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년 9월 초순-중순경 가명 김명훈을 통하여 혁노맹에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그 후 동년 10월경까지 가명 김명훈과 만나 활동하였지요

답 : 그후 언제인 줄을 기억하지 않으나 한번 만났습니다.

문 : 피고인은 “들불” 그룹에서 제작한 “들불”이라는 유인물을 노성철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지요

답 : 예.

문 : 그 “들불”이란 “혁노맹”의 핵심구성원 박대호, 노성철 등이 새롭게 만들려고 준비해오던 “혁노맹”의 전위 핵심조직인데 어떤가요

답 : 그 이름은 들은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그 조직을 준비하여 만든 유인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혁노맹의 핵심조직원들의 활동 내용을 피고인도 알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지 않나요

답 : 유인물은 노성철이 읽어보라고 주어서 별 관심없이 받았을 뿐 활동내용은 모릅니다.

문 : 결국 피고인은 혁노맹에도 가입하여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가입, 활동한 바가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혁노맹 창립선언문(초안) 내용은 공소장 공소사실 제26면 상단 5째줄부터 제28면 상단 3째줄(21)까지와 같은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소지한 압수물 중에는 혁노맹의 기관지 “불꽃” 창간호 독립보충판과 “들불” 그룹의 “들불” 창간호가 있고, 그 내용요지는 공소장 공소사실 별지(2)와 같은가요

이때 공소장 공소사실 별지(2)22) 제시.

답 : 예.

문 : 피고인은 압수된 “불꽃” 창간호 독보판은 1989년 10월경 가명 김명훈으로부터 받았지요

답 : 명확치 않으나 시기상 김명훈으로부터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고인은 “혁명의 불꽃” 그룹에의 가입 사실은 자백하면서 “혁노맹”의 가입사실은 위에서 신문한 바와 같이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 피고인은 “혁명의 불꽃” 그룹 가입사실은 이중원이 진술하고 있으니까 자백하고 “혁노맹” 가입사실은 노성철 등이 진술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인하는 것이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고인은 본건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부지·부인·진술거부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왔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고인이 가입활동한 이러한 조직의 주장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에 동조하여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21) 총자료집 II책 45쪽 참조.

22) 총자료집 II책 73쪽 참조.

답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술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사회주의혁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 공소장 제3면 5째줄부터 제4면 상단 8째줄까지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답 : 피상적,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고인은 지난 4월 26일 강경대 명지대학생이 시위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4월 27일 재야, 학원, 노동단체 등이 소위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약칭: 대책회의)를 구성 연일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5월 4일경까지 2-3일 간격으로 광주, 안동, 성남, 안양 등지에서 학생, 근로자 등이 분신, 투신 자살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그 당시 전민련으로부터 파견나가서 대책회의 총무국에서 활동하였지요.

답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평소 망 김기설과 같이 활동하면서 동인의 변혁이론, 정세관, 전술론 등에 관하여 토론한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이 알고 있는 망 김기설의 변혁이론 입장이나 정세관, 전술론은 어떠했나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망 김기설의 유서를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성격을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서 변혁을 요구하는 체제로 분석하고, 억압·수탈의 대상인 노동자 등 민중이 연대하여 민중봉기를 일으켜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 등을 타도하고, 민주주의의 민주민주정권을 창출, 민주주의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한 다음, 북한과 같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기 부모에게 남기는 유서에 의하면 자기는 이제 부모님만의 자식이 아니라 조국의 아들이자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민중혁명의 기폭제가 되고자 분신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유서내용은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가 아

니라고 판단됩니다.

문 : 위 유서내용의 주장은 피고인이 가입 활동한 "혁명의 불꽃"이나 "혁명노맹"의 변혁이론인 민족민주혁명(NDR)론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유서내용은 당시 5월 현정세를 혁명의 고양기로 보아서 지금 당장 민중봉기를 일으켜 민주민주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의 민주공화국을 창설하여 연방제로 통일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어떤가요.

답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 망 김기설의 유서에 의하면 동인은 지난 5월 초순의 상황을 혁명적 정세로 보아 자신이 분신함으로써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현정권을 타도하고 소위 민주민주정권을 수립, 민주주의의 민주공화국의 창설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어떤가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 피고인의 변혁론은 소위 민족민주혁명(NDR)이론에 입각해 있고, 망 김기설의 유서도 같은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전혀 그렇지 않으며 "혁명의 불꽃" 사람들과 단절한 지 2년이 된 바 그 이유는 피고인이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문 : 피고인은 대학재학 시절 소위 삼민투 등 활동을 하면서부터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 변혁이론을 "혁명의 불꽃"그룹이나 "혁명노맹"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그 기관지를 탐독하면서 혁명사상을 스스로 강화해 오면서 그 실천의 장이 열리기를 기다려 왔지요.

답 : 1988년에서 89년에 레닌주의에 동조한 것은 사실이나, 그후 생각이 바뀌어 지금은 소련식의 공산주의혁명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문 : 지난 4월 26일 고 강경대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연달아 학생, 근로자의 분신, 투신사건이 발생한 데다 소위 대책회를 중심으로 일부 정당세력까지 참여하여 대규모 시위형태를 벌인 정권퇴진투쟁이 그 열기를 높여갔지요.

답 : 국민적 호응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문 : 그때를 좋은 기회라 생각한 나머지 망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주고 장례 등 사후문제를 책임지기로 해서 분신자살 결의를 강화시켜 동인의 자살을 용

23) 총자료집 II책 38쪽 참조.

이하게 결핵케 한 것이지요.

답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 그 유서에서는 서준식(전민련 인권위원장)과 김선택(전민련 사무차장)에게 망 김기설의 사후 문제를 맡기기로 하니 그들과 의논할 것을 부모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예.

문 : 민중봉기에 의한 민주주의의 민주공화국의 건설이라는 폭력혁명의 선동도구로 자신의 죽음을 이용한 망 김기설이 유서에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사전에 위 서준식, 김선택 등과 의논이 되었다는 징표로 인정되는데 어떤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사후문제라는 것이 장례 등의 문제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지요.

답 : 진술한 것은 기억이 안나나 장례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실제로 서준식, 김선택 등은 망 김기설의 장례에 깊이 관여하였지요.

답 : 서준식, 김선택이 관여한 것은 알고 있으나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모릅니다.

문 : 서준식의 진술이나 장례관련 유인물에 의하면 서준식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장례에는 호상으로 하려다가 유서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 표면상으로는 장례집행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적극 관여했다고 하며, 김선택은 대책회의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어떤가요.

답 : 피고인은 당시 내근했기 때문에 장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문 : 소위 대책회의 문건들에 의하면 소위 87년 6월 10일 민중항쟁과 같은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정권퇴진을 쟁취하려고 하였는데 위 유인물을 본 일이 있나요.

답 : 기억이 안납니다.

문 : 피고인 등은 망 김기설의 분신을 기폭제로 자신들의 혁명관 내지 변혁이론을 실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결국, 본건 자살방조사건은 피고인 등이 가지

고 있는 변혁이론을 실천하려는 전형적인 투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고인은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알고 있는가요.

답 : 잘 모릅니다.

문 :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에 의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에서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살인이라도 서슴없이 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들어서 알았습니다. 또 검사가 설명하기를 "공산주의자는 자기가 속을 정도로 거짓말을 잘 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도 죽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든 것이 1920년대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살부회라는 단체이고 그 단체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스스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계타먹기 하듯이 아버지를 죽이는 단체다"라는 얘기를 하여 저를 아연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문 : 본건 분신자살과 자살방조행위는, 민족민주혁명론(NDR)에 입각한 피고인이나 망 김기설 등 관련자들의 변혁이론을 실천하는,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민중봉기의 기폭제로 이용함으로써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에 버금간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결국 망 김기설의 유서내용은 피고인 자신의 변혁이론, 정세관, 전술론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 박인철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이 공소의 망 김기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답 : 1990년 12월 말경 전민련 송년회에 처음 와서 인사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그 당시 전민련 사회국 간사로 일하였고, 김기설은 갓 사회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 처리하였지요.

답 : 피고인은 민생특위<sup>24)</sup> 간사였고, 김기설은 총무국에 들어와서 주로 대의원에 관한 업무를 같이 하였습니다.

문 : 위 사회국의 직원은 몇명이며 직원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답 : 모두 4명이 있었는데 한명은 국민연합에 파견되고 한명은 대변인 업무를 하며, 선배인 이동진과 김기설이 주로 사회국 일을 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은 김기설과 친숙하게 지낸 편이었습니까.

답 : 그렇게 친숙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김기설의 학력, 가족관계, 고향 등을 알고 있었던가요.

답 : 한양대학교에 다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으나 고향이나 가족관계는 몰랐습니다.

문 : 피고인은 강경대군 타살사건 이후 김기설이 분신자살하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분신 사건에 관하여 김기설과 개인적으로 의논하여 본 일이 있는가요.

답 : 연대 대책회의 상근 인력으로 김기설이 파견이 되어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위와 같은 논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문 : 당시 전민련에서는 연쇄적인 분신항의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답 : 특별한 견해는 없었으나, 전민련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이래선 안된다, 자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며 위 입장이 전민련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문 : 피고인은 1991년 4월 27일부터 1991년 5월 4일 22:00까지 김기설을 몇회나 만났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였습니까.

답 : 위 기간 동안 전혀 만나지 않았으며, 대화를 나누는 적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김기설이 분신을 결행하기 전에 분신할 생각을 가졌다는 말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전하여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홍성은이 5월 17일 밤에 전화했을 때 "김기설이 분신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24) '민생특위'의 오기.

답 : 없습니다.

문 : 또 "김기설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 달라"는 얘기를 하였습니까.

답 : 하지 않았습니다.

문 : 홍성은과 피고인이 통화한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 : 약 20초였습니다.

문 : 피고인은 1991년 5월 4일 22:00경 김기설이 전민련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나간 후로는 김기설을 만나본 사실이 없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1991년 6월 24일 검찰에 자진출두한 후 처음 이틀간은 잠도 못 자고 계속 조사를 받았고, 그후에는 매일 오전 10시경부터 밤 12시 이후까지 계속 조사를 받았으며, 토요일 하루는 구치소에 보내지 않고 밤샘조사를 하는 등 19일 동안 극심한 수면부족 상태에 있었지요.

답 : 예.

변호인 이석태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의 혁노맹 관계로 수사기관에 처음 조사받은 때가 언제인가요.

답 : 1991년 7월 초순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피고인은 혁노맹 관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0년 10월경 군인과 학생 등 40여명이 구속되어 군수사기관 및 안기부, 치안본부 등에서 정밀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후 1991년 2월경 관계자들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 모릅니다.

문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수사기관에 구속된 혁노맹관계 피의자들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석방되거나 집행유예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 모릅니다.

문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혁노맹관계 수사가 시작되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받은 일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혁노맹이 언제 결성되었으며, 그 조직체계, 구성원의 수 및 인적사항,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답 : 구성원수가 20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나머지 사실들은 모릅니다.

문 : 혁노맹은 지금도 그 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답 : 시기는 잘 모르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고인은 혁노맹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참여 또는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까.

답 : 조직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사실들은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혁노맹 조직원인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공소장에 혁노맹 조직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박대호 또는 노성철 등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언제인가요.

답 : 박대호는 전혀 만난 적이 없으며 노성철을 1989년 9월경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문 : 그때 서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답 :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당시 서로 다음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한 바 있었습니까.

답 :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에게

문 : 검찰조사서 업무일지를 본 일이 없다고 부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본 것이 사실이나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문 : 1990년에는 수첩을 사용하다가 1991년에는 수첩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수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며 91년도 수첩이 커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 : 90년도 수첩은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까.

답 : 집에 두고 다녔습니다.

문 : 전화번호 등은 별도로 기재하나요.

답 : 예.

재판장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재판장

변론속행

1991. 8. 28.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자료 나-1-2 (공판기록 128~131)

별지 (1) "혁명의 불꽃" 그룹 관련 유인물 소지내역

순번	유인물명	내용요지
1.	"혁명의 불꽃" 제 2, 3, 4호  "혁명의 불꽃" (44년 5월 22일)	0 제2호 (혁명주의의 대오를 굳건히) - 전국적 정치신문에 의한 노동자 전위조직 · 노동자당의 건설 등 주장하면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민족민주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선동, 혁명정세에 준비할 것을 주장  0 제3호 (혁명적 정세, 임시혁명정부) - 당면 혁명적 정세는 임시혁명정부를 최상의 전술지침으로 하여 무장봉기의 실제기술적 준비를 요한다면서 올림픽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선동하고, 남한혁명과 통일문제를 파쇼타도-임시혁명정부 수립-민주민중공화국-연방공화국(통일)의 도식을 주장  0. 제4호 - 현정세는 혁명적 정세이고 전투조직에 의한 물리적 무장봉기로 파쇼 권력을 타도하여 민주민중공화국 건설해야 통일의 유일한 경로라고 하면서 광주사태를 남한혁명의 전형이라 주장
2	"혁명의 불꽃" 제6호(신새벽 비판)	- 기회주의적 사이비 맑스-레닌 사상을 분쇄하고 혁명적 정세관에 입각한 전술관에 광주학살 파쇼권력 자체를 타도하여, 올림픽투쟁을 계급투쟁관점에서 전개하고, 자본주의 발달이 사회주의로의 급속한 발전임을 전제하여 계급투쟁의 전면적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 선동
3	"혁명의 불꽃" 제7호 (노동자의 진실비판)	- 김일성의 조선노동당 창건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직업적 혁명가로 구성되는 규율집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급투쟁을 합·비합투쟁으로 전개해야 하며 민중의 당은 합법영역에서의 혁명선동으로 민중혁명을 유도, 자유주의적 부르조아를 무력화시킬 것등 주장
4	"혁명의 불꽃" 제8호	- 혁명주의자들의 공동정치신문 발행으로 당적활동을 전개, 단결 강화해야 하고, 민중무장봉기로 임시혁명정부를 수립,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할 것을 주장

순번	유인물명	내용요지
5	"혁명의 불꽃" 제10호	- 전민련의 진로에 관하여 자유주의적 보수야당의 후비대로 전락하는 길과 독자적 민중단결로 민중공화국 건설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발전하는 길이 있다면서 혁명정부수립과 민중공화국 건설을 위한 진로를 주장
6	"혁명의 불꽃" 제10호 독립보충판	- 현정권의 파쇼탄압으로 민중의 봉기는 필연적이고 현정세는 혁명적 정세이므로 노동계급은 대중적 무장봉기를 전국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 폭력적 계급혁명을 선동
7	"6월이후의 정치 정세와 통일투쟁"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 연맹 제작 명의)	- 현정세는 혁명적 정세 전민중의 이므로 노동자계급의 총파업과 전민중의 무장봉기, 노농연대투쟁을 전개하여 민주민중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급투쟁적 통일투쟁을 선동
8	"현정치상황의 이해를 위하여" (7편과 같은 제작명의)	- 혁명적 정세관에 입각, 전계급연대의 파쇼타도 및 민중정권수립을 위한 폭력적 계급혁명을 선동하면서 통일투쟁을 민족문제로부터 남한 파쇼정권에 대한 계급혁명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9	"현재의 정세와 피티의 전술적 결의" (7편과 같은 제작명의)	- 민중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임시혁명정부 기치아래 전국적 총파업위원회 등의 구성으로 군사파쇼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폭력적 계급혁명을 선동

별지(2)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관련 유인물 소지 내역

순번	유인물명	내용요지
1	"불꽃" 창간호 독립보충판 -전행하는 백색테러 -전교조사수투쟁을 임시혁명정부생취 투쟁으로 (혁노맹 명의)	- 국가권력은 지배계급의 폭력기구로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에 야수적인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혁명군과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여 무장봉기로 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계급적 폭력혁명을 선동. - 전교조 사수투쟁은 계급적 투쟁이라면서 노동계급 중심으로 각 계층이 연대하여 전민중이 임시혁명정부의 수립투쟁을 전개해야 이를 사수할 수 있다고 주장, 민중연대 계급혁명을 선동.
2	"들불" 창간호 (들불그룹명의)	- 남한파쇼체제는 힘의 우위를 통한 복한의 국제적 고립화, 자본주의 화를 통한 통일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므로 민중은 식민지 연속 파시즘을 타도하고 반제민주민주공화국수립을 통하여 분단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등 "혁노맹" 핵심원들이 구성예비한 이적단체 "들불"의 혁명관과 통일론을 주장·선동.